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서 언 ||

그동안 WTO 편입이 지체되어 왔던 무역원활화 협정이 미국과 인도의 극적인 합의로 이제 WTO 정식 협정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잔여 핵심 쟁점도 새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업은 물론 비농산물시장접근(NAMA)과 서비스 등 이른바 DDA 협상의 3대 핵심의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향후 DDA 협상의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는 DDA 작업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이 어떠한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발리 각료 회의에서 합의된 발리 패키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전개된 DDA 협상을 주요 의제별로 분석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을 수립·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광범위한 개도국 우대보다는 매우 제한된, 그러나 대우가 좋은 예외를 확보하는 협상전략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관세감축방식(구간별 관세감축 및 조화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보다 최근 EU가 제시한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협상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GDP 증가효과 면에서 보다 많은 회원국에 분산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WTO 다자무역협상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통상관계자는 물론 DDA 협상을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번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

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될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 서언	3
■ 국문요약	5
■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1
3. 주요 연구 내용	22
■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27
1. 개요	28
2. 무역원활화	29
가. 개요	29
나. 주요 내용	31
다. 의미	36
3. 농업	39
가. 일반서비스	39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41
다. 농산품 TRQ 관리	46
라. 수출경쟁	50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52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52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53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54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6
5. 면화	57

Ⅲ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59

1. 개요	60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61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62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64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65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69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73
가. 개요	73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76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79

Ⅲ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85

1. 개요	86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87
가. 기본 전제	87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92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95
3. 동등성 분석	100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100
나. 동등성 분석	102
4. 정책 시사점	108

■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11
1. 단기 협상 대책	113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113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129
2. 중장기 협상 대책	139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139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141
■ 참고문헌	147
■ 부록	155
■ Executive Summary	159

표 차례

표 2-1.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	29
표 2-2. 주요 국제기구들의 무역원활화 정의	31
표 2-3.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의 주요 내용	34
표 2-4.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의 주요 내용	35
표 2-5. 무역거래비용 추정치에 대한 연구 결과	37
표 2-6.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의 주요 내용	44
표 2-7. 농업 TRQ 관리개선의 주요 내용	48
표 2-8. 수출경쟁 관련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51
표 4-1. NAMA 관세감축 모의실험 대상국가	87
표 4-2. 세계 무역액 및 국가(경제권)별 비중	88
표 4-3. 분석대상 국가 분류	89
표 4-4. 산업 분류	91
표 4-5. 세계 공통의 민감품목	93
표 4-6. 농산물 관세감축 공식	94
표 4-7.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GDP 증가 효과	96
표 4-8.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수출증대 효과	98
표 4-9.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국별 산업별 생산량 변동 효과	99
표 4-10.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농업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100
표 4-11.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	101
표 4-12. 동등성 분석: 농업 30%, NAMA 43%	103
표 4-13. 동등성 분석: 농업 40%, NAMA 42%	104
표 4-14.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실질 관세율 기준) ·	105

표 4-15.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 간의 관계	107
표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2013년)	119
표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2013년)	119
표 5-3. 주요국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123
표 5-4.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의 특별품목 규정	130
표 5-5. 품목별 농업생산액(2010~12년 평균)	131
표 5-6. 주요 품목의 관세율과 세번 수	132
표 5-7.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의장수정안의 관세상한 규정	133
표 5-8. NAMA 개도국 관세감축률(2008년 모델리티 수정안)	135
표 5-9.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137
표 5-10.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138
표 5-11. GSP 또는 최빈국 특혜제도에 따른 주요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 현황	145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TFAF의 주요 역할	64
글상자 3-2. 인도의 식량안보법	6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23
그림 4-1. 제4차 수정안과 평균 관세감축방식의 GDP 증가효과 비교	104
그림 4-2.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실행 및 양허 관세)	107
그림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2013년)	116
그림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2013년)	116
그림 5-3.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117
그림 5-4.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117
그림 5-5.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118
그림 5-6.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118
그림 5-7.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123
그림 5-8. EU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4
그림 5-9. 미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5
그림 5-10. 중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6
그림 5-11. 인도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6
그림 5-12. 일본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7
그림 5-13. 한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127
그림 5-14. 우리나라의 2011~13년 평균 대개도국 수출 비중(비농산물)	136
그림 5-15.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상품 구성비 변화(2000년, 2012년)	143
그림 5-16.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2012년)	14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DDA 협상은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 및 최빈개도국, 면화 등 4개 분야의 10개 의제에 대하여 이른바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DDA 협상은 i) 무역원활화 합의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과 함께, ii) 발리 패키지 이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 그리고 iii) 발리 이후 DDA 협상에 대한 추진계획이라고 할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협상 등 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무역원활화 합의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은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합의내용을 법률·조문화하여 WTO 협정문에 정식으로 편입시켜 무역원활화 협정의 2015년 7월 발효를 준비하는 협상이다. 발리 패키지 이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은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이외의 의제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 관심사인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나 면화 문제, 그리고 인도의 관심사인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 등에 대한 후속작업 성격의 협상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이미 발리 각료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만들기로 합의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협상은 DDA 협상의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DDA 협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DDA 협상의 일정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2014년 DDA 협상은 예상과 달리 인도가 무역원활화 합의의 WTO 편입을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2014년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도는 무역원활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도를 포함하여 일부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인도는 개도국들이 관심을 보이는 발리 패키지의 다른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유독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만 추진한다면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된 협상 결과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에 반대하였다. 결국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은 인도 등 몇몇 개도국들의 반대로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당초 편입 시한인 2014년 7월 말을 넘겨 포스트 발리 DDA 협상 전체의 교착상태로 이어졌다.

2014년 9월 이후 재개된 DDA 협상에서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당사자인 미국과 인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어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인도의 입장이 다소 변했고, 인도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가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이후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정은 특별 일반이사회(11월 26~28일)를 통해 가까스로 WTO 협정에 정식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그 진전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없어짐으로써 201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발리 패키지 후속협상은 물론 향후 DDA 협상의 일정표를 마련하는 작업계획(work program)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¹⁾

1) 아제메도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11월 26~28일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마련 시한이 종전 2014년 12월 말에서 2015년 7월 말로 연기된 것도 DDA 협상의 본격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 발리 DDA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전체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별한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이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도한 개도국 우대를 담고 있는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협상의 출발점은 DDA 출범 이후 나타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주장은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의 핵심내용이나 감축 수치들이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협상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우대 축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이해가 걸린 농업 부문의 특별품목이나 관세 상한 등의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DDA 협상에 대한 성패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논의에 따르면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은 농업은 물론 NAMA, 서비스 등 DDA 협상의 3대 핵심의제를 모두 포함함은 물론 개별 의제안에서의 이익의 균형과 함께 의제간 이익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별 협상 내부에서 이익의 균형은 물론 농업과 비농업, 농업과 서비스, NAMA와 서비스 간 이익의 균형도 함께 고려하여 DDA 작업계획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자통상대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국내의 DDA 협상에 대한 전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포스트 발리 DDA 협상 작업계획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별로 협상대책방향을 수립·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책적 의의가 크다. 특히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마련 시한이 2015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미리 분석하고 그에 따라 협상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는 물론 연구의 시의성도 높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여 2015년 7월 말로 설정된 DDA 작업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을 수립·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첫째,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로 정식 편입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절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2014년 11월 초까지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핵심쟁점인 무역원활화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과 절충을 이해하는 것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의 쟁점 분석과 전망에 필수적이다. 둘째는 향후 전개될 DDA 협상의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대한 전망이다. 농업과 NAMA, 서비스 등 DDA 협상의 3대 핵심의제가 서로 연계되어 작업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도 작업계획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은 불확실하다. 특히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을 놓고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어 DDA 작업계획에 대한 전망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DDA 작업계획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중점 분석한다.

셋째는 만일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이 변경된다면 그 가능성과 변경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기된 관세감축공식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이다. EU가 처음 제기한 관세감축 단순화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장개방 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협상대책의 수립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주요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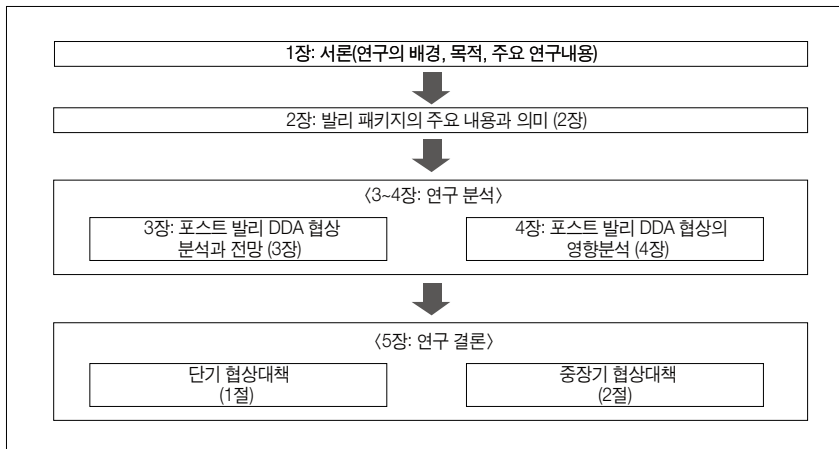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과 작업계획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리 패키지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수이다. 제3 장에서는 향후 전개될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을 전망한다. 주요 의제별

로 2014년 DDA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별 주요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논의를 둘러싸고 미국과 인도의 대립과 갈등, 타협 과정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DDA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한다.

제4장은 계량분석이다.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단순감축방식, 즉 평균 및 최소 감축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한 다음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평균감축률을 찾아 비교·분석한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협상 대책을 수립·제시한다. 특히 중장기 DDA 협상 대책이란 관점에서의 중장기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이는 발리 패키지가 2013년 말에 도출되어 그 이후의 DDA 협상에 대한 연구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서진교 외(2013a)가 발리 각료회의 이후 최근까지 DDA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의제별로 기존 우리나라의 입장을 검토한 적은 있다. 이 연구에서도 관련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 실패에 대해서는 김민성(2014)이 있다. 김민성(2014)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인도 간의 타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연구 가운데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고 대개는 발리 패키지 자체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FAO(2014)는 발리 패키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농산물 교역과 식량안보에 주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또한 DDA 협상에서 식량안보문제를 공식 논의하여 관련 합의를 도출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산물 교역왜곡과의 관계는 보다 깊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ellmann(2014)은 발리 패키지가 개발 및 WTO 다자통상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Bellmann의 연구결과는 발리 패키지 의미를 분석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발리 패키지를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Hoekman(2013)은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를 과거와 같이 시장개방을 협상하는 장(forum)보다는 회원국의 정책현실을 이해하는 대화 및 이해의 장(forum)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WTO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WTO 안팎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도 가능한 빨리 WTO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C(2014)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벽을 축소하여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10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리 패키지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WTO의 법적 해석 문제를 다룬 Haberli(2014)의 논문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관련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무역원활화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이란 두 핵심 이슈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대립하며, 최종적으로 타협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하여 DDA 작업계획 협상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 본 연구는 최신 연구이자 후발연구로서 갖는 시간상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특징은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리 패키지의 내용을 연구한 외국 문헌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는 부분적인 분석에 그쳐 DDA 협상 전체 의제를 조망하면서 발리 패키지가 갖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이 연구의 세 번째 특징은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이 연구의 기여이다. 특히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협상대책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차별성이기도 하다. 특히 새로운 시장접근

개선 방식으로 거론되는 평균 및 최소 감축률 방식의 관세감축을 기존의 단계별 또는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방식과 비교·분석하여 그 의미를 검토하고, DDA 협상에 참여하는 주요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본 연구만의 의미있는 작업이다.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3. 농업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5. 면화



1. 개요

DDA 협상은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이른바 ‘발리 패키지’라는 WTO 발족 이후 최초의 다자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료회의 개시 직전까지만 해도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무역원활화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²⁾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도 어렵게 타협된 잠정합의를 각료회의 직전 인도가 번복하는 바람에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미국, 인도, 중국 등 DDA의 주요국들이 서로 타협하며 이견을 절충함으로써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³⁾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농업, 개발과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면화 등 4개 분야 10개 의제에 관해 9개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과 1개의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⁴⁾ 또한 DDA 협상의 잔여 이슈에 대해

-
- 2) 특히 의무화 수준을 규정한 section I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무역원활화는 각료회의 직전까지 잠정타협안 도출에 실패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의 짧은 기간에 무역원활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3) 미국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서 인도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인도도 무역원활화에서 기존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여 무역원활화와 공공비축보조의 잠정 허용화 방안에서 미국과 인도의 타협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발리 패키지가 도출되었다.
 - 4)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과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은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각료선언(declaration)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WTO의 통상관행으로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각료결정(decision)도 채택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각료선언보다 강해 분쟁해결 등에서 판단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서도 향후 12개월(2004년 12월 말)이내 작업계획(work program)을 수립하되, 특히 발리 패키지 가운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⁵⁾

표 2-1.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

분야	세부 내용	비 고
I. 무역원활화	① 무역원활화	각료결정
	② 일반 서비스	
II. 농업	③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각료결정
	④ 농업 TRQ 관리규정에 관한 양해	
	⑤ 수출경쟁	
III. 개발 및 최빈개도국	⑥ LDC 특혜원산지	각료결정
	⑦ LDC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지 특별대우에 관한 웨이버(waiver)	
	⑧ LDC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⑨ 개도국우대 모니터링 메커니즘	
IV. 면화	⑩ 면화 보조 및 시장접근	각료결정

자료: WTO(2013a)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무역원활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여러 관련 국제기구에서 각 기구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맞게 무역원활화를 정의하고 있다. WTO

5) 이외 예멘의 WTO 가입 승인, 지식재산권(TRIPs) 분야의 비위반 및 상황제소에 관한 결정,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관한 결정, 소규모경제 작업계획에 관한 결정,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결정, 무역과 기술이전 관련 결정 등이 발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는 물품의 통과를 포함하여 물품의 이동, 반출, 통관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경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표준화 등에 중점을 두고 무역원활화를 정의하고 있다.⁶⁾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무역원활화를 가장 활발히 논의하는 기관으로 무역원활화에 관해 많은 지침과 기술적 자문을 해왔다.⁷⁾ WTO가 간소화, 조화, 투명성, 협력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무역원활화를 보는 반면 WCO는 이러한 원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⁸⁾

한편 OECD, UN/CEFACT⁹⁾ 등은 무역원활화의 개념에 국경 절차는 물론 판매자 및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품 이동과 지불에 필요한 정보흐름의 간소화 및 조화까지 포함시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무역원활화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CEFACT는 공급망 관리에 따른 구매-운송-지불 모델(Buy-Ship-Pay Model)에 근거하여 무역원활화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통상거래의 주요 절차인 상업적 절차(계약체결, 물품주문, 포장, 인증서 획득 등), 운송 절차(운송 계약, 물품 수거, 운송, 배송 등), 규제 절차(수출입 허가서 획득, 세관신고, 보안절차적용 등),

6) WTO의 경우 TBT 협정, SPS 협정, 원산지규정 등 여타 WTO 협정과의 중복으로 인해 무역원활화에 대한 개념을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로 제한하고 있다(서진교 외 2013a, p. 46).

7) 대표적인 예로 WCO는 1974년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을 발표시켰고, 1999년에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위해 동 협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토협약(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은 2006년 2월 3일 발효되어 2014년 기준으로 95개 국가가 서명하였고, WTO 무역원활화 협상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8) WCO(2011), p. 13.

9) UN/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산하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촉진기구를 의미한다.

금융 절차(신용등급, 보험, 자금제공, 지불이행 등) 등 국경 내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무역원활화는 항만, 도로, 정보통신 시설 등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물리적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수출입 관련 통관, 서류, 인허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등 행정 절차의 간소화, 관련 규제 및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운송, 보험, 금융과 같은 무역 관련 서비스 절차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표 2-2. 주요 국제기구들의 무역원활화 정의

기관	정의
WTO	•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말하며, 여기서의 무역 절차란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이동에 필요한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수집·제출·전달·처리와 관련된 행위, 관행, 절차를 의미
WCO	•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방지를 말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방법으로 통제 수준을 개선시키고 현대적 기술 적용을 통해 획득
UN/CEFACT	•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상품이 이동하고 지불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의 흐름과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를 의미
ICC	• 국경간 제품의 교역과 관련된 절차의 효율성 개선을 의미
OCED	• 상품이 국제적으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하고 지불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의미
APEC	• 국경간 상품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타 절차와 통관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의미

자료: ADB·UN ESCAP(2009), p. 3, 재인용: 서진교 외(2013a), p. 45.

나.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 협상은 2003년 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2004년 7월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July Package)가 도출됨에 따라 뒤늦

10) ADB·UN ESCAP(2009), p. 4.

게 DDA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 농업, NAMA, 서비스 등 주요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진전이 없는 데 반해 무역원활화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은 2011년 제8차 제네바 각료회의 때부터 조기수확이 가능한 대표적 의제로 거론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크게 물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신속하게 하는 규정(Section I), 개도국 우대조치(Section II),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Section III) 등 3개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기존 GATT의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명확화 및 개선을 위한 규정과 세관 협력에 관한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조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과 규제의 공표 및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GATT 제10조에 해당된다. 동 협정에 따르면 수출입·통과와 관련된 정보를¹¹⁾ 즉시 공표하고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수출입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효 전에 수출입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 전 물품의 품목 분류, 원산지 등에 관한 서면 결정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세관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불복신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11) 수출입·통과 관련 정보는 구체적으로 ① 수출입·통과 관련 절차 및 양식, 서류, ② 실행 관세 및 조세, ③ 수출입·통과 관련 수수료 및 요금, ④ 품목분류 및 과세평가 규정, ⑤ 원산지규정 관련 규제, ⑥ 수출입·통과 제한 또는 금지 요건, ⑦ 수출입·통과 절차 위반 시 벌칙 규정, ⑧ 불복 또는 재심 절차, ⑨ 수출입·통과 관련 여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 ⑩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말한다.

제6~10조는 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GATT 제8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세관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요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한정되며, 관세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은 위반 정도와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품 통관 및 반출 촉진을 위한 조치, 국경기관간의 협력, 수출입·통과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GATT 제5조 통과와 자유화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통과 교통 관련 형식 및 서류 요건, 세관통제를 최소화하고, 가능할 경우 통과 교통에 대한 별도 인프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통과 교통에 대한 행정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및 요금 부과 금지, TBT 협정상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적용 금지, 필요 이상의 보증금 요구 제한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12조는 수출입업자의 관련 법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수출입 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 경우 정보 교환, 검증 요청 절차, 기업기밀의 보호, 정보 제공의 범위, 정보 요청에 대한 연기 및 거부 요건, 정보보호침해 발생 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ection II는 개도국 우대조치로 Section I의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및 능력 배양, 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협정의 이행 정도와 시기를 개도국 및 최빈국의 능력과 연계하고,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이행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Section II는 Section I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시기와 지원 여부에 따라 A, B, C 의무로 구분하고 개도국 스스로 A, B, C 의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A 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고, B 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 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 기간 경과 및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한 의무를 말한다. 이외에도 Section II는 A/B/C 의무 및 이행일 통보 절차, B/C 의무이행 연장을 위한 조기경보체제 도입, 이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B/C 의무간 이동,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유예기간, 지원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정보의 공표와 이용 가능성	수출입·통과 관련 정보 공표, 인터넷을 통한 공표, 질의처 설치 등
제2조 의견 제출 기회, 시행 전 정보 및 협의	법령 시행 전 공표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제3조 사전심사	수입 전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평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 제공
제4조 불복 절차	세관당국의 행정 결정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불복 신청권 보장
제5조 공정성, 비차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조치	식품, 음료 등에 대한 강화된 통제 및 조사에 대한 통보, 유치, 시험 절차
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관세법 위반 시 벌칙 규정
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도착 전 처리, 전자 납부, 반출 및 제세 분리, 위험관리, 통관 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의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화물, 부패성 상품
제8조 국경기관간 협력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기관간 협력
제9조 수입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절차 및 문서 요건, 복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단일서류접수창구, 선적 전 검사, 관세사의 사용, 공통 국경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거부된 상품, 일시 수입 및 역내 가공
제11조 통과와 자유	통과의 자유 보장
제12조 세관협력	관세법 등의 적발을 위한 세관 정보 교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p. 93.

표 2-4.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A 의무 통보 및 이행	- 개도국은 발효 즉시 이행, 최빈국은 발효 1년 후까지 통보가능
B/C 의무 확정 이행 일자 통보	- 개도국의 경우 B 의무는 (i) 협정 발효 즉시 B 의무 통보와 예시적 이행일자(indicative date)통보 (ii) 협정 발효 1년까지 B 의무의 확정 이행일자(definitive date)를 통보 (단 불가능할 경우 위원회에 연장 요청 가능) C 의무는 (iii) 협정 발효 즉시 C 의무 통보와 예시적 이행일자(indicative date),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 (iv)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 공여국 및 수원국은 이행지원 관련 협약에 대한 정보 제출 (v) (iv)의 정보제출 후 18개월 안에 공여국과 수원국은 지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수원국은 C 의무의 확정 이행일자(definitive date)를 통보 - 최빈국의 경우 B 의무는 (i) 협정 발효 후 1년까지 B 의무를 통보하고 예시적 이행일자(indicative date) 통보 가능 (ii) (i)의 통보일로부터 2년 안에 B 의무 확정 및 확정 이행일자(definitive date)를 통보하고, 불가능할 경우 위원회에 연장 요청 C 의무는 (iii) 협정 발효 1년 후 C 의무 통보 (iv) (iii)의 통보일로부터 1년 후 이행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정보 제출 (v) (iv)의 통보일로부터 2년 안에 공여국과 수원국은 지원 관련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수원국은 C 의무의 예시적 이행일자(indicative date) 통보 (vi) (v)의 정보제출 후 18개월 안에 공여국과 수원국은 지원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수원국은 C 의무의 확정 이행일자(definitive date) 통보
B/C 의무의 조기경보체제	- 통보한 확정 이행일자까지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도국은 이행일로부터 120일, 최빈국은 90일전에 위원회에 새로운 이행일, 시유,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통보 - 개도국은 새로운 이행일이 18개월, 최빈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 가능 - 1회 연장이 이를 초과하거나 2회 이상의 연장일 경우 위원회에 연장 승인 요청
B/C 의무 이행	-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개도국/최빈국으로부터 이행능력 부족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60일 안에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전문가그룹은 120일 이내에 검사와 자문제공 - 전문가 그룹은 5명으로 구성, 구성원은 선진국과 개도국 국적간 균형 유지
B/C 의무간 이동	- B/C 의무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
분쟁해결절차 유예	- 개도국은 발효 후 2년 동안 A 의무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면제 - 최빈국은 발효 후 6년 동안 A 의무, 발효 후 8년 동안 B, C 의무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면제

자료: WTO(2014a)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Section III는 WTO 내에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의 이행과 국내 조율을 위해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더불어 TBT, SPS 등 여타 WTO 협정과 관계, GATT 1994의 제22조 및 2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등을 명시한 최종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의미

무역원활화로 인한 대표적인 혜택으로 무역거래비용의 감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거래비용은 물품의 이동과 지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제공과 관련된 준수 비용, 교역 관련 서비스 수수료 등과 같은 직접비용 그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의 결여, 사업 기회 상실과 같은 간접비용으로 구분된다.¹²⁾ 이와 같은 무역거래비용은 거래물품가격의 약 0.5~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5 참고). 그러나 투명성 결여로 인한 예측 가능성의 결여, 사업기회 상실과 같은 간접비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개도국은 무역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원활화로 인한 실제 무역거래비용의 감소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¹³⁾ 특히 절차준수비용이 높은 중소기업은 무역원활화로 인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ADB·UNESCAP(2009), p. 5.

13) *Ibid*, p. 5.

표 2-5. 무역거래비용 추정치에 대한 연구 결과

구분	국가	수입/수출	교역거래 비용		비고
			범위	비율(%)	
US National Council on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NCTD), 1971	미국	평균 수출입 비용	서류, 보험사(finance and insurance carrier), 운송 대리인(forwarder)/관세사 관련 비용	7.5	기업실문조사
Swedish Trade Procedures Council(SWEPRO), 1985	스웨덴	평균 수출입 비용	서류관련 비용	4.0	세관 및 기업이 제출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치 추정
Ernst and Whinney, 1987a, 1987b	Intra-European Community	수출입 비용	통관절차 준수 비용	1.5	
EC, 1989	Intra-EC	수출입 통합 비용	서류 비용	3.5~15.0	명확하게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1994	대세계	-	금융비용, 통관, 기업정보, 운송 및 통신비용(직접 및 간접 비용)	7.0~10.0	美 National Council on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1971년), Intra-European Community(1998년)와 기타 정보사용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1998	일본	수입비용	국경 절차 관련 준수 비용	0.5~2.4	일본 제조업체 및 무역 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Haralambides and London-kent, 2002	멕시코, 미국	수출입 통합 비용	1) 처리, 검사 등의 비용 2)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1) 0.6~2.1 2) 0.1~4.0	Hummels(2001)에 기초하여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계산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02	일본	수입비용	수입 및 항만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	0.5~1.2	OECD(2003)에 기초
Anderson and Van Wincoop, 2004	선진국	수출입 통합 비용	1) 정보 비용 장벽 2) 통과비용	1) 6.0 2) 9.0	직접 관찰과 추정된 비용(inferred costs)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추산

주: 교역거래비용은 거래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로 나타냄.
자료: OECD(2003), p. 8. 제인용: ADB · UN ESCAP(2009), p. 6.

이러한 무역거래비용 감소 외에도 정부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밀수, 사기 등에 대한 국경통제의 효율성 증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세수입 확보, 수출입업자의 규제준수강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¹⁴⁾ 또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교역 절차는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생산비용의 감소,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출입 증가, GDP 증가와 같은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¹⁵⁾

OECD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은 약 10%, 개도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13.2~15.5%까지 잠재교역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⁶⁾ 미국의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 수출이 1조 430억 달러, GDP는 9,600억 달러 증가하고 2,060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한편 국내 연구로 서진교 외(2013a)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약 1.5~ 3.9% 증가하고, 수출은 1.3~7.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원활화 협정의 타결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무역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도국들이 이러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14) UNECE(2002), p. 2.

15) ADB·UN ESCAP(2009), pp. 5-8.

16) Moisé *et al.*(2011); Moisé *et al.*(2013).

17) Hufbauer and Schott(2013).

한편,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른 관련 조치의 도입 및 이행에 따라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무역원활화 조치 도입으로 인한 국내 규제에 제·개정 비용(regulatory costs), 관련 신규 부서의 설립에 따른 기관설립비용(institutional costs), 교육훈련비용(training costs),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비용(equipment/infrastructure cost)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⁸⁾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개정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발굴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진단 및 재설계 비용(diagnostic and re-engineering costs),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지도제고와 변화관리비용(Awareness-raising & change-management costs) 등이 부각되고 있다.¹⁹⁾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발리 패키지는 UR 농업협정문상 허용대상보조인 정부의 일반서비스에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목적의 토지개혁 및 농촌생계보장(Land Reform and Rural Livelihood Security)’과 관련된 6개의 정책(① 농지개혁, ② 토양보전 및 자원관리, ③ 가뭄관리 및 홍수통제, ④ 농촌고용정책, ⑤

18) Moisé(2013), pp. 9-12, 재인용: 서진교 외(2013a), p. 170.

19) *Ibid*, pp. 9-12, 재인용: 서진교 외(2013a), p. 170.

소유권발행, ⑥ 농민정착정책)²⁰⁾을 추가하였다.²¹⁾ 이에 따라 기존 일반 서비스 보조로 분류가 불분명했던 홍수통제나 가뭄관리, 토양보전 등의 보조가 앞으로는 명백한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일반서비스 항목 추가 논의는 지난 2006년 아프리카 그룹이 처음 제기하여 2008년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포함되었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비교적 논란이 적은 농업 분야의 대표 의제로 발리 패키지에 포함되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도 홍수통제나 가뭄관리 등은 정부의 중요한 일반 서비스로 선진국에도 해당되는 중요 사업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6개 항목의 추가는 회원국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쉽게 발리 패키지로 합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존의 일반 서비스나 또는 다른 허용보조를 통해 이번에 추가된 6가지 항목을 이미 허용보조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해 왔다. 따라서 발리 패키지의 일반서비스 추가로 인해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농업보조정책의 통보에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귀농·귀촌지원 정책이나 4대강 홍수관리 등의 보조사업은 농민정착 정책이나 홍수통제정책으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 WTO(2013b).

21) 기존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에 나와 있는 일반 서비스 항목은 ① 연구사업, ② 병해충 방제, ③ 교육 훈련, ④ 지도 및 자문, ⑤ 검사, ⑥ 유통 및 판매촉진, ⑦ 하부구조 지원 등 7개로 이루어져 있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1) 개요

농업보조금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자국 농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예: 농산물 수출세)을 부과하는 마이너스 보조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UR 농업협상 당시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이 감축보조(AMS)를 얼마나 감축할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자국의 감축대상 농업보조(AMS)는 없는 것으로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통보된 감축보조는 관세에서 양허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향후 지급할 수 있는 감축보조의 최대상한이 되어 감축보조가 없다는 것은 곧 향후 지급할 수 있는 감축보조 상한이 0이 되고 결국 향후 감축보조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UR 협상 당시 감축보조가 없다고 통보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UR 이후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²²⁾ 한도 이내에서만 감축보조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이유에서 농업 부문에 가격지지와 같은 감축보조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공공비축제도는 대개 정부가 설정한 관리가격 또는 지지가격으로 곡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감축보조로 분류되고, 따라서 최소허용보조 한도 내에서만 운용되어 개도국으로서는 농정 운용에 큰 제약을 받았다.

22) 최소허용보조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록 감축보조라 할지라도 그 지급 규모가 적어 감축의무를 면제해 준 보조를 말한다. 감축의무면제 기준은 농업 총생산액 또는 개별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 설정 감축보조가 없다고 통보했어도 생산액의 10% 이내에서 감축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2007~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급등으로 발생하였다. 공공비축운용에 따른 관리가격이나 지지가격도 같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감축보조도 증가하여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즉, 감축보조 계산방식이 국내 관리(지지)가격과 외부참고가격과의 차에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산량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관리(지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축보조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에 따라 개도국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할 경우 관리가격으로 수매를 하더라도 이를 감축보조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후 G20가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을 기초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를 주장하였다. 결국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문제는 2008년 농업 모델리티 4차 의장수정안에 “개도국의 저소득 또는 자원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비축의 경우 해당 비용은 감축보조 계산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포함되었고, 이후 이 문제는 더 이상 특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인도가 G33 내부 논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발리 패키지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인도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낸 데에는 공공비축보조 운용과정에서 인도의 감축보조가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G33 국가들은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을 제시하고 4차 의장수정안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으로 당시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화된 의제라고 주

23) 외부참고가격이 1986~88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국내관리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내의 가격 차가 확대되고 이는 감축보조의 확대로 이어진다.

24) 2006년 아프리카 그룹이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장하면서 발리 패키지의 하나로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를 허용할 경우 식량 재고가 증가하여 덤핑수출로 이어지고, 결국 국제무역을 왜곡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G33는 대안으로 공공비축보조의 감축보조 한도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 ① 개도국 최소허용보조(DM)의 상향 조정: 기존 생산액의 10%에서 20%로 조정
- ② 공공비축보조 계산 시 외부참고가격의 기준기간 변경: 기존 1986~88년 평균에서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조정
- ③ 대상 생산량을 기존 생산량에서 해당 수매량으로 조정
- ④ 관리(지지)가격 계산 시 관련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농가 수취가격을 사용

그러나 최소허용보조의 상향 조정이나 외부참고가격의 조정은 WTO 농업협정문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반대가 심하였다. 이에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관리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다른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근본적인 해법 대신에 잠정적으로 UR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이용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²⁵⁾

25) 평화조항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WTO 회원국 상호간 문제를 제기하기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공공비축보조에 대하여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공공비축보조가 보조상한을 초과하여 WTO 규정에 위배되어도 이를 이유로 분쟁해결절차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주요 내용

발리 각료회의에서 쟁점은 평화조항의 적용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발리 각료회의 직전에 인도는 2017년까지 평화조항을 적용하되 그때까지 항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도가 이를 반복하고 항구적인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평화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리 각료회의는 결렬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인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 인도도 무역원활화에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여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발리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평화조항 적용은 항구적 해법이 마련될

표 2-6.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하여 잠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제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채택될 수 있는 항구적 조치 마련을 위해 협상 추진 • 항구적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아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전제로 개도국의 전통 주식작물에 지급되는 보조에 관하여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
통보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보조(AMS)상한 또는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농업위에 통보 • 자국의 국내보조통보를 계속 이행 •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추가정보를 매년 제공 • 관련 모든 정보의 갱신, 정정 및 추가정보 제공
우회방지, 세이프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비축에 의한 구매 재고가 무역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통보된 프로그램 이외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음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공공비축정책에 대하여 요청 시 여타 회원국과 협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에서 제출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작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각료회의의 시까지 작업계획을 마련

자료: WTO(2013c)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때까지로 하되 WTO의 일반보조금협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전통적 주식’으로 한정되며, 기존 공공비축정책에 한정하되(신설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조항 등이 있다.

3) 의미

발리 패키지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잠정조치는 그동안 인도가 주장해 온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인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정책에 한해, 그것도 엄격한 적용 요건과 보조금협정 위반 시 제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외에 동 잠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개도국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을 위해 그동안 가장 무역왜곡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던 가격지지정책을 발리 패키지에서 비록 잠정적이긴 해도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WTO 농업협정의 원칙 훼손의 의미와 연계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개도국의 식량안보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WTO 다자차원에서 충분히 각인된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WTO 규정에 맞게 공공비축미를 시장가격으로 구매·방출하고 있어 사실상 동 조항의 혜택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도를 도입했으며, 2005년 이후 동 보조액이 감축보조상한을 초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 제도를 활용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²⁶⁾ 다만 향후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의 항구적 조치 마련 시 우

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산품 TRQ 관리

1) 개요

TRQ(Tariff Rate Quota)의 기원은 UR 농업협상까지 올라간다. UR 농업협상 당시 관세화에 대응하여 생긴 최소시장접근(MMA)과 현행시장 접근(CMA)이 UR 이행과 함께 TRQ로 합쳐졌다. 그러나 UR 농업협상 당시에 최소시장접근이나 현행시장접근 물량 자체를 설정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서 정작 TRQ 운용에 필요한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TRQ를 관리·운용해 왔으며, TRQ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그리고 같은 국가라도 품목별로 TRQ 소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수출국은 낮은 TRQ 소진율이 수입국의 자의적인 TRQ 관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논의 흐름은 2004년 기본골격 합의문에서 TRQ 관리방식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2008년 농업 분야 모델리티 의장수정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브라질이 발리 각료회의 조기수확의제로 TRQ 관리방식의 개선을 제시하면서 발리 패키지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26) 우리나라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금을 고정직불금(허용대상보조)과 변동직불금(감축대상보조)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 이후 감축대상보조의 상한인 1조 4,900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2006년 9,007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개 3,000~6,000억 원 정도였으며, 2011~12년은 국내 쌀 가격이 목표 가격(17만 83원/80kg)보다 높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TRQ 관리 개선은 수출입국간에 큰 이견 차이가 없이 의장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리 각료회의에서도 합의도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마지막까지 대립하는 바람에 양국이 상호 절충하여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²⁷⁾

2) 주요 내용²⁸⁾

발리 패키지의 농산물 TRQ 관리는 관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TRQ 관리를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상 수입허가로 간주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TRQ 개시 90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TRQ 신청기관을 1개 기관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TRQ 신청 처리 기간을 30~60일 이내로 제한하여 보다 신속한 TRQ 처리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TRQ 관리개선의 핵심은 TRQ 소진을 제고를 위해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한 점이다. 즉 수입국은 미소진 TRQ가 발생하지 않도록

27) 미국은 개도국 우대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패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도국에 의 무이행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중국은 개도국 우대는 이미 합의된 문안으로 이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이미 과도한 TRQ 물량을 설정하여 지금도 TRQ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TRQ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부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였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절충하는 데 성공하였다. 즉 제12차 WTO 각료회의(2019년 예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포함한 미소진 메커니즘을 재검토하되 이때까지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속서 B에 등재된 국가(미국,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5개국) 들은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유보 권한을 확보하였다. 즉 미국도 경우에 따라 개도국과 같이 미소진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개도국 우대를 수정하지 않는 대신 미국 자신도 개도국과 동일하게 개도국 우대를 향유할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주요 내용은 서진교 외(2013a)에 자세히 나와 있다.

록 필요 이상의 행정절차를 철폐하고, 그럼에도 미소진이 발생했을 경우²⁹⁾ 현행 TRQ 관리방식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automatic, unconditional license-on demand) 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소진 메커니즘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비조건부 허가방식이란 허가제도를 유지는 하되 허가권 발급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 즉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착순 방식과 다름없다.

표 2-7. 농업 TRQ 관리개선의 주요 내용

발동 연차	주요 내용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이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거나 TRQ 소진율이 65% 미만인 경우 회원국은 농업위원회에 TRQ 약속 이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는 추적등록처에 그 우려를 등록할 수 있음. - 관련 수입국은 모든 이해관계국가에 특정 시장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TRQ 관리에 대해 논의 - 관련 수입국은 이해관계국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 문제의 해결 여부를 농업위에 통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국가는 해당 문제에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농업위원회에 제공)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동 기간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관련 수입국이 TRQ 관리방식을 수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농업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수입국의 조치로 소진율이 65% 이상이거나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납득할 경우 감시 종료 - 관련 수입국의 조치로 소진율이 65% 미만인 결과 회원국은 TRQ 관리에 대한 추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동 기간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② 3년 동안 매년 소진율이 일정 증분만큼 증가하지 못한 경우 ③ 소진율이 40%를 초과한 경우, 최소 8%포인트, ④ 소진율이 40% 이하인 경우, 최소 12%포인트인 경우, ⑤ 이해당사자간에 미소진 이유가 실제 시장에 따라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⑥ 이해관계국가가 미소진 메커니즘의 최종 발동 단계를 희망한다고 농업위원회에 진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 수입국은 이해관계국가의 협의에 따라 ① 국경에서 선착순 배정 방식이나, ② 관세쿼터 내 수요가 있을 경우 자동적·무조건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된 방식은 최소 2년간 유지됨 - 단, 개도국의 경우 대안적인 TRQ 방식을 선택하거나 현행방식 유지 가능

자료: WTO(2013d)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9)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또는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3) 의미

TRQ 관리개선은 설정된 TRQ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TRQ 소진율과 운용 현황을 매년 WTO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지금까지 TRQ 수입에 적용되었던 다양한 무역제한적인 조치들이 축소되고 그 운용이 투명해졌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WTO 회원국 가운데 현재 TRQ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약 50개국이다. TRQ 소진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브라질, 호주, 스위스, 캐나다 등이며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 등의 TRQ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TRQ 소진율이 평균 61%이다. 최근 5년간 TRQ 소진율이 평균 65%(미소진 메커니즘 적용의 기준 소진율) 미만인 품목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선착순이나 비조건부 허가제가 운용되고 있어 TRQ 관리개선이 우리나라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⁰⁾ 다만 TRQ 제도와 관련된 정보의 공표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 관련 고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 호밀이나 귀리, 옥수수, 수수 등의 종자용 곡물은 TRQ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선착순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 농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 서진교 외(2013a) 참고.

라. 수출경쟁

1) 개요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이미 지난 UR 농업협상을 통해 선진국은 6년간 금액기준으로 36%, 물량 기준으로 21%를 감축하기로 하였다(개도국의 경우는 10년간 금액기준으로 21%, 물량기준으로 14%를 감축). 이후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농산물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 내용은 2008년 농업부문 모델리티 의장수정안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DDA 협상의 진전이 늦어지면서 2013년이 다가오자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는 이미 2005년 홍콩 각료회의의 위임사항이므로 발리 각료회의 조기수확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브라질이 G20를 대표하여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 선진국만 2013년까지 수출보조의 50%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만의 의무 규정에 대하여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개도국도 2016년까지 수출보조의 25%를 감축하는 수정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보조의 감축에 EU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EU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수출보조금 철폐 결정은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과 함께 다른 의제에서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수출보조금만 감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발리 각료회의 마지막 날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수출보조금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³¹⁾

2) 주요 내용

발리 패키지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은 수출보조 및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2005년 홍콩 각료결정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수출조치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수출경쟁이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있어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출경쟁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속서에 제시된 수출보조 이외 수출신용 및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 프로그램, 식량원조, 농업 수출국영무역기업 관련 질의 양식에 합의하였다. 특히 농업위원회에서 수출경쟁 관련 진전 사항을 논의하고 2015년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이러한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2-8. 수출경쟁 관련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의장 4차 수정안	G20 제안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수출보조	2013년 선진국은 완전 철폐(개도국은 2016년 완전 철폐)	2013년 선진국만 50% 감축 (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홍콩 각료선언에 명시된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 - 농업 모델리티 4차 의장수정안이 향후 논의의 주요 기초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 -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과 같은 조치의 감축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감축약속 이하의 수준을 유지 -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
	농업협정 9.4조(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에 따른 지원은 5년 후인 2021년 철폐	수출보조 전면 철폐 이후 5년 경과한 다음에 철폐	
수출신용	상환기간은 최대 180일(개도국은 360일로 시작하여 4년차에 180일로 조정)	540일(개도국 1,080일), 3년 내 540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국영무역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자료: WTO(2013e)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1) 서진교 외(2013b), pp. 10~11.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 발리 패키지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혜원산지,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특혜대우 웨이버,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개도국 우대조항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4개 합의로 구분된다. 다만 이러한 우대 패키지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쳐 우대 조치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발리 패키지는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설령 선진국이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특별대우를 부여한다고 해도 실제 상품수출에서 해당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단순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 발리 패키지의 기본 취지이다.

이에 따라 발리 패키지는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를 규정하는 요소를 가능한 투명하고 단순하며 객관적으로 만들어 최빈개도국이 보다 용이하게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계산 방법을 단순화하고, 역외재료 가치 사용비율을 최대 75%까지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²⁾ 아울러

32) WTO(2013f).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에도 HS 6단위나 HS 4단위 변경기준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³³⁾ 또한 특혜제공 국가와의 양자누적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간의 누적, 그리고 GSP 수혜국간의 누적, 특혜제공 국가가 정한 지역그룹을 형성하는 개도국간의 누적 등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누적을 허용하여 최빈개도국이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고 원산지 재료들을 결합하여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⁴⁾

한편 행정처리 측면에서도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서류 요건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자율증명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⁵⁾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원산지위원회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진전사항을 연례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³⁶⁾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단일의 원산지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할 경우 가급적 동 가이드라인과 일치하게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최빈개도국이 세계 서비스 무역에 참여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³⁷⁾

33) *Ibid.*

34) *Ibid.*

35) *Ibid.*

36) *Ibid.*

37)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적어 0.6% 수준이다. 최빈개도국의 무역 상황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무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특혜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고, 결국 서비스일반협정(GATS)상의 최혜국대우의무(제2.1조)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GATS상 MFN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발리 패키지는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최빈개도국 서비스웨이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⁸⁾ 또한 향후 최빈개도국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수출 관심 분야 및 공급 유형에 대한 공동요구사항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제출 후 6개월 이내 관련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³⁹⁾ 이외에도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 확대와 최빈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⁴⁰⁾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는 2005년 홍콩 각료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즉 선진국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선언한 개도국은 2008년 또는 DDA 협상 결과 이행 시점까지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고, 만일 이를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번 수 기준으로 97%까지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면서 향후 이를 점진적으

38) WTO(2013g).

39) *Ibid.*

40) *Ibid.*

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DDA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이러한 합의의 이행문제는 회원국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발리 각료회의를 앞두고 개발 이슈의 하나로 다시 조기 수확 의제로 등장하였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문제의 핵심은 선진국이 제외한 세번 수 기준 3% 교역액이 실제 선진국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90% 이상이 된다는 점이다.⁴¹⁾ 따라서 홍콩 각료선언에도 불구하고 3%의 예외 때문에 최빈개도국은 무관세-무쿼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들이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해 100%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면 최빈개도국들은 약 80억 달러의 수출 증가와 함께 약 70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농산품(설탕, 면화 등)이나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 때문에 100% 무관세-무쿼터를 꺼리는 것이다. 이에 발리 패키지는 무관세-무쿼터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부여 수준이나 시한 등은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각료회의 시까지 선진국⁴³⁾ 및 자발적 참여 개도국은 최빈개도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부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⁴⁴⁾ 또한 회원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

41) Jatkar and Mukumba(2014), p. 14.

42) Hufbauer and Schott(2013), p. 7.

43) 이때의 선진국은 아직까지 최빈개도국 상품의 97% 이상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지 않은 선진국을 의미한다.

세-무쿼터 부여 제도와 변동 사항을 특혜무역제도 투명성 메커니즘에 따라
서 통보하고, 무역개발위원회는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위해 취해진 다
양한 조치에 대한 연례적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⁴⁵⁾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발리 패키지는 개도국 우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례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 조항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그
범위, 기능, 위임사항, 운영 방안 등이 합의되었다. 메커니즘의 범위는
WTO 협정을 포함하여 각료 및 일반이사회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도국 우대가 해당된다.⁴⁶⁾ 여기서 메커니즘은 WTO 개도국 우대조항
의 이행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⁴⁷⁾ 또한 메커니
즘은 적절할 경우 관련 WTO 기구에 개도국 우대 이행의 개선을 위한
조치의 고려나 이행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권고할 수도 있다.⁴⁸⁾

그러나 메커니즘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존 WTO 협정과 각
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
다.⁴⁹⁾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무역개발위원회 전담 세션에서 운
영되며, 연 2회 개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⁵⁰⁾

44) WTO(2013h).

45) *Ibid.*

46) WTO(2013i).

47) *Ibid.*

48) *Ibid.*

49) *Ibid.*

5. 면화

면화 문제는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서아프리카 면화생산 4개국(C-4, Cotton-4: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⁵¹⁾이 선진국이 지급하는 면화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기된 문제다. 즉,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면화 수출에 의존하는 C4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급하는 면화보조금으로 인해 국제 면화가격이 하락하고 이 때문에 면화를 수출하는 아프리카 면화생산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합의된 기본골격에 근거하여 면화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Cotton Sub-Committee)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면화 문제가 본격 논의되었다. 이후 2005년 홍콩 각료합의에서 선진국은 ① 면화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2006년까지 철폐하고, ② DDA 이행과 동시에 최빈개도국 면화수출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며, ③ 면화교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면화보조금을 다른 농업보조금보다 큰 폭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무관세-무쿼터와 마찬가지로 DDA 협상의 지연과 함께 미국이 반발하여 면화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발리 각료회의를 앞두고 다시 소규모 패키지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발리 각료회의에서 서아프리카 면화생산국은 흥

50) *Ibid.*

51) 많은 최빈개도국의 농촌가계와 수출수익은 면화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말리는 농촌가계의 약 40% 또는 250만 명이 면화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작지의 1/3이 면화 재배지역이며 외화획득의 주요 소득원이다. 부르키나파소도 면화가 수출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며,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베냉은 면화가 외화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며, 고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차드도 인구의 40%가 면화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2/3가 면화이다.

콩 각료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발리 패키지의 면화 합의 내용은 회원국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고 면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 진전을 강조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3개 분야에서 면화와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위원회에서 연 2회 특별면화세션을 개최하기로 하였다.⁵²⁾ 또한 면화에 대한 개발원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면화 분야 협의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⁵³⁾

52) WTO(2013j).

53) *Ibid.*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1.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발리 이후 DDA 협상은 ①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② 발리 패키지 후속조치(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LDC 우대조치, 면화 문제 등), ③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마련 등 크게 세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이란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내용을 법률·조문화하여 WTO 협정문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무역원활화의 법률·조문화 작업은 2014년 5월 완료되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은 인도의 반대로 WTO 회원국간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해 당초 시한인 2014년 7월 말을 넘겨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2014년 11월 말 특별일반이사회를 통하여 어렵사리 WTO 정식 협정문에 편입되었다.

발리 패키지 후속조치는 여러 의제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가 큰 관심을 표명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문제였다. 이에 대해 발리 패키지는 2017년까지 개도국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항구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잠정조치로서 평화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놓고 미국과 인도가 계속해서 대립한 결과 공공비축을 포함한 다른 발리 패키지 의제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말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합의로 2015년부터는 항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일반이사회에서 2015년 말까지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마련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DDA 협상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발리 이후 DDA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 역시 2015년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동안은 무역원활화와 공공비축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미국과 인도의 합의로 협상 진전에 더 이상의 방해물은 없는 상황이다. 당초 2014년 12월 말까지로 설정된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시한도 특별이사회에서 2015년 7월 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2015년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발리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법적인 검토와 함께 2014년 7월 31일까지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15년 7월까지 무역원활화 협정을 발효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개도국들도 2014년 7월 31일까지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해야 하는 A의무를 WTO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포스트 발리 무역원활화 논의는 이미 합의된 무역원활화 합의문을 기초로 이를 법률·조문화하는 협상과 함께 무역원활화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반이사회(GC: General Council) 산하에 무역원활화준비위원회(PCTF: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의장으로

Esteban Conejos 제네바 주재 필리핀 대사가 임명되었고, 위원회는 무역원활화 협정문안의 법적 검토, A 의무 통보 및 접수,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을 위한 개정 의정서 작성 등 무역원활화 협정의 2015년 7월 발효를 위한 후속 기술적인 작업을 담당하였다.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무역원활화 협정안의 법적 검토는 회원국 각자가 협정문안의 법률적 검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에 협의를 도출하는 회원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검토과정에서 협상내용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합의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조항별 구조의 일관성 유지, 가독성 및 명료화 증진을 위한 문장 또는 문단 구조의 변경 등 법적인 검토는 주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되었다. 이러한 법률·조문화 작업은 2014년 5월 초에 완료되었으며 이로서 무역원활화 협정문이 탄생하였다.

개정의정서 작성은 노르웨이가 큰 역할을 하였다. 노르웨이가 무역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7월 31일 일반이사회에서 개정 의정서 채택은 실패하였고, 무역원활화 협정은 WTO 체제로 편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2014년 7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개도국의 A 의무 통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브라질 등은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은 아직 미통보 상태이다. A 의무 통보는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 결렬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 협정을 지지하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2월 3일 기준으로 5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과 WTO 정식 편입으로 앞으로 A 의무 통보국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의무 통보내용을 보면 우리나라⁵⁴⁾, 홍콩⁵⁵⁾, 싱가포르⁵⁶⁾, 이스라엘⁵⁷⁾, 멕시코⁵⁸⁾, 대만⁵⁹⁾ 등이 Section I의 모든 조항을 A 의무로 지정,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7.6조), 싱글윈도(10.4조),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10.9조)과 세관 협력(12조) 등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A 의무로 지정하였다.⁶⁰⁾ 브라질은 사전심사 일부(3.6조의 b, 3.9조의 a. ii), 도착전처리(7.1조),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일부(7.7.3조), 통과 일부(11.9조)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A 의무로 지정하였다.⁶¹⁾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1.2조), 위험관리(7.4조),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7.7조), 특송화물(7.8조), 싱글윈도우(10.4조) 등 제도의 도입과 유지에 큰 비용이 요구되는 조치와 세관협력의 일부 분야가 A 의무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⁶²⁾

54) WTO(2014b).

55) WTO(2014c).

56) WTO(2014d).

57) WTO(2014e).

58) WTO(2014f).

59) WTO(2014g).

60) WTO(2014h).

61) WTO(2014i).

62) 김민성(2014, p. 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무역원활화 협정의 기술적 후속작업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2014년 7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위한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지원 신탁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이 WTO 안에 설치되었다. 동 신탁기금(TFAF)이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무역원활화 관련 기술지원 프로그램 강화, 제도 개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개도

글상자 3-1. TFAF의 주요 역할

- ① 개도국 및 최빈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필요한 특정 수요를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공여국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예: WTO 수요 평가 프로그램, 통보 및 이행 일정 준비 등)
- ②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관련 기술 지원의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여국과 수여국 간 정보교류 흐름 기반 조성(예: 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수집, 이행경험 공유 및 교육훈련 자료수집,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정기회의 운영 등)
- ③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공여국의 지원 기금과 개도국 연계 지원
- ④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금 제공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잠재적 공여국은 발굴하였으나 프로젝트 개발 능력이 부족할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를 위한 전문가 지원을 위해서 최대 미화 3만 달러까지 자금 지원
 -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공여국을 찾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국내 워크숍, 공무원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을 위해 최대 미화 20만 달러까지 자금 지원

자료: WTO(2014a), "Azevedo launches new WTO Facility to deliver support to LDCs and developing countries,"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fac_22jul14_e.htm(검색일: 2014. 7. 30), 재인용: 김민성(2014), pp. 4-5.

국 또는 최빈개도국이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개도국과 공여국의 지원 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일 등이다. 이외에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하여 자금제공이 가능한데 공여국이 있을 경우 프로젝트 준비지원을 위해 최대 3만 달러, 공여국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2014년 7월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 실패는 여러 갈등이 절충되지 않은 채 편입을 종용한 결과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적 형식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최빈개도국이 도하선언 제47항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을 근거로 무역원활화 협정의 잠정 발효를 주장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능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WTO 내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이 설립됨으로써 이를 통해 아프리카연합 중심의 최빈개도국들의 반발은 수그러졌다.

그러나 인도의 반대가 다시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문 편입의 발목을 잡았다. 인도는 발리 패키지의 여타 이슈에 대한 논의 진척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 시한 연기를 주장하였다. 이는 인도가 자국의 이익과 직접 연결된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는 자국민의 빈곤 퇴치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2013년 8월 인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식량안보법’을

발효시켰다. 식량안보법에 따라 인도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의 인구가 식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안보에 필요한 곡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⁶³⁾

인도의 이러한 보조금은 가격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WTO 농업협정상 감축보조로 분류된다. 인도는 식량안보법의 시행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이 인도에 허용된 감축보조의 상한(생산액의 10%)을 초과하여 WTO 농업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인도는 DDA 농업협상에서 저소득 또는 자원빈곤 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보조를 허용보조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식품가격 상승을 반영한 감축보조 계산방식의 개선을 주장하였다.⁶⁴⁾ 즉, WTO 농업협정문은 감축보조금 계산 시 사용되는 고정외부참고가격으로 1986~88년 평균가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6~88년 평균가격은 지난 30여 년의 식품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정부의 관리가격이 세계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인데도 고정외부참고가격보다 항상 높아 감축보조가 과도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⁶⁵⁾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도정부가 공공배급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최소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으로 곡물을 수매하고 재고를 비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63) 인도의 식량안보법 시행으로 매년 23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인도 GDP의 0.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Food Security Portal(2014), “Will India’s National Food Security Bill Help or Hurt?,” <http://www.foodsecurityportal.org/will-indias-national-food-security-bill-help-or-hurt>(검색일: 2014. 12. 5).

64) WTO(2014j).

65)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는 (관리가격—고정외부참고가격) × 지지물량으로 계산한다.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생산증가를 유발시켜 농산물 가격과 교역

글상자 3-2. 인도의 식량안보법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2009년 통일진보연합(UPS)이 재집권하면서 구상된 법안으로 이후 UPS가 2014년 총선을 의식해 주요 선거공약으로 활용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 법은 인도의 심각한 빈곤문제가 반영된 결과물로, 인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평균 8~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도 전체의 빈곤율은 37.2%에⁶⁶⁾ 달하며(2009년 기준) 글로벌 기아지수도 경고수준으로 인접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북한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단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률	7.9	7.9	9.3	9.3	9.8	3.9	8.5	10.3	6.6	4.7

자료: World Bank(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4. 8. 1).

2009년도 인도의 글로벌 기아지수

	순위 (84개국)	영양결핍 인구비중(%)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비중(%)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GHI ¹⁾
중국	5	9.0	6.0	2.2	5.7
스리랑카	35	21.0	18.1	2.1	13.7
북한	46	32.0	17.8	5.5	18.4
파키스탄	58	23.0	31.0	9.0	21.0
인도	65	21.0	43.5	7.2	23.9
방글라데시	67	27.0	41.0	6.1	24.7

주: 1)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개도국 및 최빈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아지수(GHI: Global Hunger Index)를 매년 발표. GHI는 영양결핍 인구비중, 5세 이하 아동의 저체중 비중,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단순평균한 지수로 0~100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상태임.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2009), p. 13, pp. 41-43.

UPS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퇴치하고 국민의 영양상태 개선 및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기존 산재된 지원제도를 종합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2013년 8월 인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시켰다. 식량안보법 시행으로 농촌인구의 75%, 도시인구 50%에게 매월 5kg까지 식품보조(1kg당 쌀은 3루피, 밀은 2루피, 곡물가루(coarse grains) 1루피로 구매가능), 극빈층 가구에는 매월 35kg의 곡물에 대해 식품보조, 임산부와 수유모에게 최소 6,000루피 출산수당 제공, 6개월~14세 아동대상 무료 점심급식이 제공되었다.⁶⁷⁾ 또한 동 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문제점 보완을 위한 주 단위 식량위원회(State Food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기존 식량보조제도인 공공배급제도의 비효율성 및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과 함께 주정부가 대상 가구를 선별하게 함으로써 제도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자료: 김민성(2014, p. 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6) 김미수(2012), p. 40, 재인용: 김민성(2014), p. 7.

67) Worldpress(2013), pp. 7~9.

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고정외부가격의 변경이나 인플레이션 반영 등의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발리에서의 합의는 이와 같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정조치로서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가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보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평화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핵심은 평화조항의 적용기간이다. 발리 패키지는 항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평화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인도는 평화조항 적용기간이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문의 명료화를 요청하였다. 즉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적용되는 평화조항은 각료회의 시점과 관계없이 항구적인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이사회의 결정으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인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발리 패키지의 내용을 다시 논의하게 되면 자칫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종적으로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인도가 요구하는 명확화를 그대로 수용하되 그 형식은 인도가 주장하는 일반이사회의 결정(decision)사항이 아니라 일반이사회 의장의 선언(statement)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미국은 의장의 절충안을 수용했으나, 인도가 의장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절충안을 거부했고, 결국 7월 말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은 무산되었다.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2014년 9월 재개된 협상에서도 무역원활화 WTO 편입과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을 놓고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계속되어 DDA 협상 전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채택이 선행되어야 공공비축 문제를 비롯한 여타 발리 패키지의 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스위스, 멕시코,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노르웨이, 홍콩 등 주요국도 무역원활화 협정 기준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아울러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통해 인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하였다.

반면, 인도는 기존 일반이사회의 결정이라는 요구에 추가하여 공공비축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법도출 시한으로 2014년 말을 제시하였다. 과거 발리 각료회의의 예를 들어 회원국들의 의지만 있으면 2014년 12월 말까지 공공비축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12월 말까지 WTO에 편입되면 2015년 7월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도의 식량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였다.⁶⁸⁾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이 계속 지연되자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수차례

68)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도의 GSP 품목(98%) 및 대출한도 확대계획을 언급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였다(“India Seeks Cooperation from African Countries at the WTO: Rajeev kher”(2014),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Media Release(August 21)). 또한 지난 9월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무역협정이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FAO가 개도국의 빈곤층과 농민의 우려를 대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Indian PM Seeks Food Security Support At Meeting with Head of UN Food Body”(2014), BNA(September 11)).

의 회의 끝에 2014년 10월 31일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4대 동심원 이슈(concentric circles)를 설명하고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⁶⁹⁾ 4대 동심원 이슈란 ① 무역원활화와 공공비축문제, ② LDCs 이슈를 포함한 여타 발리 패키지 이행 문제, ③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④ 현재의 교착상태가 WTO 협상 기능에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을 말한다.

이에 따른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은 무역원활화와 공공비축 보조 연계에 따른 DDA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2는 여타 발리 패키지의 이슈를 논의해 가면서 무역원활화와 공공비축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3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복수국간 협정으로 이행하는 경우로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나리오 3A는 WTO 밖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3B는 WTO 안에서 개방적인(open ended) 방식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 시나리오 3B이다. 이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MFN을 기반으로 복수국간 협정으로 이행하고 무역원활화 협정의 Section II에 따른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향후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고 여타 발리 패키지의 논의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지지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3B에 대한 기술적·법적 절차

69) WTO(2014b), “Azevêdo urges members to continue talking about ways to move forward beyond Bali impasse,” WTO 2014 NEWS ITEMS.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tnc_infstat_31oct14_e.htm(검색일: 2014. 11. 14).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 이행은 지지하지만 이를 복수국간 협정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 개도국들과 최빈개도국들도 무역원활화 협정이 복수국간 협정으로 이행된다면 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였다.⁷⁰⁾ 개도국의 입장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협정화는 농업이나 개발 이슈에 대한 논의의 진전 없이 결국 무역원활화 협정만이 이행되는 형국이 되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 역시 이에 반대하였으나 다른 한편 복수국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국만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논의가 인도에 큰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인도 사이의 입장 대립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은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서이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UN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함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이 입장 절충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DDA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인도가 주장해 온 공공비축에 대한 평화조항 적용기간의 명료화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인도가 주장해 온 일반이사회의 결정방식에 동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인도의 타협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결국 미국과 인도는 11월 중순 호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관한 양국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의 합의안은 11월 27일 특별일반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11월의 특별일반이사회에서는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이외

70) “Discord on TF/Food Security”(2014), *Washington Trade Daily*(November 1).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협정 부속서 1A 편입을 위한 결정,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대한 결정 등 총 3개의 결정사항이 채택되었다.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관한 일반이사회 결정은 평화조항 적용기간의 명료화와 항구적 해법도출을 위한 향후 협상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발리 각료결정 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대해 농업 협정에 근거하여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으로(*shall refrain from challenging*) 되어 있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shall not challenge*) 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⁷¹⁾ 또한 평화조항 적용기간도 항구적 해법이 도출·채택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⁷²⁾ 아울러 항구적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항구적 해법 도출 및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였다.⁷³⁾ 그리고 이를 위해 DDA 농업협상과 별도로 농업위원회 안에 특별세션(*Committee on Agriculture in Special Session*)을 설치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항구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⁷⁴⁾ 특히 무역협상위원회(TNC)와 일반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세션의 진행 사항 검토를 의무화하였다.⁷⁵⁾

이러한 미국과 인도의 합의는 결국 양국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 절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양국 모두에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준 것

71) WTO(2014k).

72) *Ibid.*

73) *Ibid.*

74) *Ibid.*

75) *Ibid.*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는 동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리 패키지의 법적 명료화를 원하는 방식으로 얻었기 때문에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불안(제소 가능성)을 확실히 제거한 소득을 얻었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항구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당초 2017년 12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항구적 해법 마련 시한을 2년 앞당겼다. 특히 농업위원회 안에 이를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하는 등 인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미국도 무역원활화 협정의 2015년 하반기 이행이라는 기존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켰으며, 평화조항의 적용기간도 당초 발리 패키지의 취지대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될 것이 없다. 그리고 양국 모두 DDA 협상 진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향후 무역원활화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WTO 협정 제10조 3항에 따라 회원국의 2/3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2014년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을 놓고 회원국들이 대립한 것이 작업계획의 논의를 가로막은 주요 변수이기도 하였으나 이와 함께 DDA 작업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부족도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

진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DDA 작업계획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 첫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그리고 서비스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세 분야의 협상을 모두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이미 회원국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아제베도 사무총장도 이를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농업과 NAMA, 서비스 등 핵심 의제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향후 DDA 협상 논의의 기초로서 거론되는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협상의 기초로서 농업과 NAMA에서는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으로 볼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4차 의장수정안의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도국은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하여 향후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4차 의장수정안 자체가 합의된 것이 아니며, DDA 출범 이후 10년이 지나 그동안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나 정책 변화가 크기 때문에 향후 논의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4년 3월 케언스그룹이 국내농업보조 동향자료를 배포하면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이 최근 들어 농업보조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보조 및 농산물 관세에 관해 새롭게 갱신된 정보에 기초해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이 완전히 무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선진국의 주장대로 합의된 문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 의장수정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제베도 사무총장도 2008년 의장수정안이 향후 협상의 중요한 파라미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로운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요구와 이에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개도국의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진 집합체로서의 4차 의장수정안이 갖는 성격을 종합해 볼 때 4차 의장수정안이 현 상태 그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빈개도국 관심사는 이상적인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DDA 협상이 가진 개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발리 각료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최빈개도국 관심사항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빈개도국의 개발 이슈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접근방법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DDA 작업 계획에는 최빈개도국들의 관심사인 무관세-무쿼터나 면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다루어지되, 그 수준은 미국이나 EU

등 일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1) 농업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문제의 갈등이 전체 DDA 협상 진전의 핵심 관건이 되는 바람에 농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협상이 부상하였다. 포스트 발리 농업협상은 발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수출경쟁 등 3대 분야로 나누어 논의가 계속되었다.

농업협상에서도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등 3대 의제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과 NAMA, 서비스 간에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회원국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향후 협상의 기초로서 4차 의장수정안의 지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008년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변한 만큼 4차 의장수정안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G33 등 수입국들은 기존의 협상 성과인 4차 의장수정안이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G33은 특별품목(SP), 특별긴급관세(SSM),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해 이슈 페이퍼를 작성해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특별품목의 경우 4차 의장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인 반면 특별긴급관세는 4차 의장수정안보다 다소 강화된 내용으로 UR 양허관세 준수 조항에 대한 제한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저소득 또는 자원빈곤 생산자에 대한 지원 목적일 경우 감축보조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개도국의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우대조치 활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의 수출국영무역(중국), 농업협정 9.4조에 의한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인도), 국내농업보조 증가(중국, 인도), 개도국의 투입재 보조 등 전반적으로 개도국 우대 관련 이슈에 대해 선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분야별 논의 동향을 보면 국내보조 분야에서 선진국들은 국내보조가 감소 추세이나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와 중국 등 개도국은 개도국의 국내보조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인 반면 선진국의 보조는 상업농에 대한 보조로 보조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미국도 농산물 시장가격지지가 자원의 왜곡과 해당 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의 식량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별도의 페이지를 제출하여 인도의 가격지지에 기반한 식량안보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미국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커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접근의 허상이 논의되었다. 미국은 일부 개도국 등은 실행관세가 양허관세의 1/3 수준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세의 복잡성과 고율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제한과 수출보조 통보양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출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여 과거 수출제한의 자료를 분석하며 WTO 통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우리나라도 가세하여 수입국의 식량접근성을 방해하는 수출제한에 적절한 규

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수출국은 소극적인 입장으로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보조 통보양식은 세계 수출물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주요 수출국에 포함시켜 수출보조자료를 갱신하되 주요 수출 농산물 22개를 HS 코드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EU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보다 단순화된 관세감축방식을 제기하여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EU는 DDA 협상이 현재와 같이 타협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로 논의 내용의 복잡성을 들었다. 현재와 같은 구간별 관세감축공식과 다양한 예외조치 등이 기술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 보다 단순화된 접근방식⁷⁶⁾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 관세감축을 제시하였다.

2) 기타 NAMA와 서비스 분야

포스트 발리 NAMA와 서비스 분야 협상도 무역원활화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대립과 갈등으로 특별한 진전 없이 검토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요구가 구체화된 특징이 있다. NAMA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의 차이를 다시 지적하고 관련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축소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개도국에 주어진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에서 높은 계수의 스위스 공식(관세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6) 예를 들면 UR 농업협상의 관세감축과 같이 평균 및 최소 감축률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예외를 축소시키는 방안임을 언급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현행 4차 의장수정안의 개도국 신축성 축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업과 마찬가지로 EU에 의해 평균감축률-최소 감축률 방식의 관세감축의 단순화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서비스협상은 현재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이 진행되고 있어 DDA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WTO 밖에서 진행되는 서비스협상을 DDA 협상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DDA가 일괄타결되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복수국간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개방의 수준이 과거 DDA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던 수준보다 높아 이를 DDA 내부로 들여와서 다자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주목을 받았다. 비록 서비스협상에서 진전은 없었지만 농업과 NAMA 등 핵심 이슈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TiSA에서의 합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DDA에 도입하여 일괄타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1) 국내 농업보조 감축의무 완화 가능성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의 농업보조 증가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특히 감축보조가 증가한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 관련 자료의 갱신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최근 들어 농업보조금이 급증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압박 의도가 있다.⁷⁷⁾ 특히 설령

선진국들의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도국도 농업보조감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진국은 국내 농업보조 감축에서 과거와 같은 개도국의 일방적인 공세는 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농업보조 감축의무 완화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농업보조감축에서 수세에 있는 미국은 이를 기회로 선진국의 농업보조 감축의무 완화 내지 미국에만 특별히 부여된 혜택(예: 블루박스 감축)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도 농업보조감축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선진국의 무역왜곡적인 농업보조 지급을 비판해 오던 개도국의 압박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의 방향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의 농업보조감축에서만은 감축의무가 강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은 기존과 같은 개도국의 국내 농업보조 감축공세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편 신흥개도국들의 입장에서 농업보조 증가에 따라 기존 UR 농업협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즉 UR 당시 감축보조금을 주지 않아 그 상한이 0으로 설정된 개도국들이 앞으로 감축보조를 운용할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형평성 내지는 차별 방지를 등을 내세워 개도국의 감축보조 상한 재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개도국들도 중장기적으로 농업보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국과 인도의 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국내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77)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들의 농업보조의 급증 추세는 제5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2) 개도국 우대의 폭 축소 가능성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과도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선진국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다. 즉,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한데 이들 국가가 개도국 우대 조치를 이용하여 관세감축이나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우대조치 없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므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다.

따라서 4차 의장수정안을 기초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해도 4차 의장수정안이 가진 개도국 우대(예: 개도국에 대한 투입재 보조, 개도국의 수출 국영무역,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 등)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 우대를 최대한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NAMA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의 차이가 커 이를 제거하는 차원(이른바 *water* 제거)에서 개도국들에 부여된 다양한 신축성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선진국들의 이러한 개도국 우대 축소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역으로 개도국 우대를 개도국만의 혜택이 아닌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 선진국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발리 패키지의 TRQ 관리개선의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선진국들의 요구는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부문의 특별품목(SP)이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요구에 G33를 포함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이를 주장함으로써 개도국 우대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설령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대신 선진국의 의무수준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선진국에도 일종의 신축성을 부여받는 지렛대 전략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은 협상 의제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4차 의장수정안에 포함된 개도국 우대의 범위와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3) 개발차원의 최빈개도국 이슈는 포함되지만 제한적 우대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이기 때문에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이 개발 이슈나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빠뜨릴 수 없다. 특히 발리 각료 회의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개발차원의 최빈개도국 관심사항은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던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심사가 상당 부분 작업계획안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핵심 최빈개도국 이슈인 면화 문제와 무관세-무쿼터 등은 농업 및 NAMA에서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는지에 따라

서 그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도하라운드나 개발라운드로는 점을 감안하여 발리 수준의 패키지보다 한층 구속력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질 것이다.

4) 경우에 따라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 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감축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⁷⁸⁾ EU가 단순 관세감축방식으로 평균감축방식을 구체화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의 주요 목표가 다양한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평균감축률을 적용하면 개도국 스스로가 자신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최소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고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감축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평균과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복잡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관세감축 논의가 간단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협상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는 방식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78) 예를 들어 선진국은 단순 평균으로 X% 감축하되 어느 품목이나 최소 Y% 감축하고,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의 2/3를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평균-최소 감축률 방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체에 이미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된 개도국에 대한 우대나 융통성은 철폐 내지 축소되는 것과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접근방식이 수용된다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개도국 우대조치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도국 우대조치는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에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1. 개요

이 장에서는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시장접근개선방식의 하나로 단순 평균-최소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해당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및 DDA 협상 주요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CGE 분석을 통해 계량해 본다. 특히 기존 4차 의장수정안에서 제시된 상품 분야 관세감축방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률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찾는 동등성 분석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동등성 분석은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 대한 전망과 우리나라의 협상대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일 4차 의장수정안과 동등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단순 평균 감축률이 제시될 수 있다면 구태여 지금과 같이 복잡한 감축방식 논의를 피할 수 있으며, 주요국간 서로의 이해관계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협상 진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상품 분야에 한해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하여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농업과 NAMA 분야의 4차 의장수정안에서 제시된 관세감축률과 신축성, 개도국 우대 등을 적용하여 세계 전체 및 DDA 주요국들의 GDP 및 후생 변화를 살펴본다.

이후 현행 세계 각국의 관세율 정보를 이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에 의해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예상되는 감축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CGE 분석 결과로 나타난 4차 의장수정안의 GDP 및 후생효과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평균 관세감축률을 그리드서치(grid search) 방법으로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 의미를 도출한다.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1) 국가 분류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과 NAMA의 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대상국가의 분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WTO 사무국에서 NAMA 협상을 위해 배포한 NAMA 관세감축 모의실험에 나오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WTO의 NAMA 관세감축 모의실험에서 국가 분류는 선진국으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 국가(경제권)를 설정하였으며, 개도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29개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표 4-1).

한편 WTO에서 발표하는 세계 무역액 통계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비중 상위 35개 국가군을 설정하였다(표 4-2). 이들 35개 국가군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되 DDA 협상에서 주요 협상력을 보이는 국가를 다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적인 국가분류로 한국, 미국, EU(28개국), 중국, 인

표 4-1. NAMA 관세감축 모의실험 대상국가

해당 국가	
선진국 (9)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개도국 (30)	아르헨티나, 바레인,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이집트,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오만, 이스라엘,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튀니지, 터키, UAE

자료: WTO(2008c)를 기초로 저자 재작성.

표 4-2. 세계 무역액 및 국가(경제권)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무역액(수출+수입)	비중	누적비중
1	EU(28개국)	4,542	15.1	15.1
2	중국	4,159	13.8	28.8
3	미국	3,909	13.0	41.8
4	일본	1,548	5.1	46.9
5	한국	1,076	3.6	50.5
6	캐나다	932	3.1	53.6
7	러시아	866	2.9	56.5
8	인도	779	2.6	59.0
9	멕시코	771	2.6	61.6
10	UAE	630	2.1	63.7
11	대만	575	1.9	65.6
12	사우디아라비아	544	1.8	67.4
13	호주	495	1.6	69.0
14	브라질	492	1.6	70.7
15	태국	480	1.6	72.3
16	말레이시아	434	1.4	73.7
17	스위스	430	1.4	75.1
18	터키	404	1.3	76.5
19	싱가포르	401	1.3	77.8
20	인도네시아	370	1.2	79.0
21	베트남	264	0.9	79.9
22	노르웨이	244	0.8	80.7
23	남아공	222	0.7	81.4
24	카타르	172	0.6	82.0
25	홍콩	161	0.5	82.5
26	나이지리아	159	0.5	83.1
27	칠레	156	0.5	83.6
28	아르헨티나	156	0.5	84.1
29	쿠웨이트	144	0.5	84.6
30	베네수엘라	143	0.5	85.1
31	이스라엘	142	0.5	85.5
32	우크라이나	140	0.5	86.0
33	카자흐스탄	132	0.4	86.4
34	필리핀	122	0.4	86.8
35	콜롬비아	118	0.4	87.2

주: 1) EU 교역액은 EU 내부 교역액은 제외한 것임.

2) 수입액은 본선인도가격으로 계산됨.

3) 재수출액 및 재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WTO(2014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4,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검색일: 2014. 10. 17).

도, 브라질 등 6개국(경제권)은 별도의 독립경제권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국가는 세계 무역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등 3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표 4-3).

표 4-3. 분석대상 국가 분류		
국가 분류	국가	
한국		
EU (28)		
미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군)은 DDA 협상에서 협상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국가로 설정	
중국		
브라질		
인도		
선진국		① 일본 ② 캐나다 ③ 스위스 ④ 호주 ⑤ 노르웨이
개도국	① 러시아 ② 멕시코 ③ 대만 ④ 사우디아라비아 ⑤ 태국 ⑥ 말레이시아 ⑦ 터키 ⑧ 인도네시아 ⑨ 베트남 ⑩ 남아공 ⑪ 나이지리아 ⑫ 칠레 ⑬ 아르헨티나 ⑭ 베네수엘라 ⑮ 이스라엘 ⑯ 필리핀 ⑰ 콜롬비아 ⑱ UAE ⑲ 페루	
	최빈 개도국	UN 기준에 의한 최빈개도국

자료: 저자 작성.

미국과 EU는 DDA 협상의 핵심 경제권이자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 별도로 분류했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도 개도국으로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DDA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하였다. 미국과 EU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은 여타 선진국으로 분류한 후 이를 대표하는 국가로 세계 무역 비중을 감안하여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5개국이 여타 선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했다.⁷⁹⁾ 개도국은 한국과 중국, 브라질, 인도 등 4개국과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나머지 개도국을 의미하며, 세계 무역액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브라질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와 중동국가, 중남미국가 등 19개 국가가 여타 개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⁸⁰⁾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은 UN에서 규정한 국가 분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산업 및 요소 분류

산업분류는 농업을 6개 산업(군)으로, 그리고 수산 및 채취업(석탄, 석유, 가스, 광물)과 임산물은 같은 산업으로 제조업에 포함했다. 채취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7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비스는 1개로 취급하여 전체 산업을 총 15개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은 ① 쌀, ② 곡물, ③ 채소·과일, ④ 육류·낙농, ⑤ 가공식품(유지류, 식품, 음료 및 담배), ⑥ 기타 농업 등 6개 부문으로 세분하였는데, 기타 농산물은 이미 자유화가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79) 단 농업 부문은 자료의 제약상 일본, 캐나다, 대만, 호주의 4개국이 여타 선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80) 단 농업 부문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6개국이 여타 개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가 개방에 따른 충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 사탕수수, 산 동물, 설탕 등을 포함하고 있다.

NAMA는 채취업(임업, 수산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과 7개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7개 제조업은 ① 섬유, ② 화학 및 화학제품(정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③ 철강·금속, ④ 수송기기, ⑤ 전기·전자, ⑥ 기계, ⑦ 기타 제조업 등이며 기타 제조업은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인쇄 및 광물제품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업은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는 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자연자원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투입요소에 대한 분류는 GTAP version 8에서 주어진 기본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연자원도 이동에 제약이 있으나, 비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 그리고 자본 등의 생산요소는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표 4-4. 산업 분류

No.	String	GTAP 57	HS
1	쌀	1, 23	1006
2	곡물	2, 3, 8	10, 11 (1006은 제외)
3	채소 및 과일	4	07, 08
4	육류 및 낙농	9, 10-12, 19, 20, 22	01, 02, 04,
5	가공식품	5, 21, 25, 26	09, 12, 15-24
6	기타농업	6-7, 9-12, 24	05, 06, 13, 14
7	채취업	13-18	03, 25-28
8	섬유·직물	27, 28	50-67
9	화학·고무·플라스틱	32, 33	29-40
10	철강·금속	35-37	72-83
11	수송기기	38, 39	86-89
12	전기·전자	40	85
13	기계	41	84, 90
14	기타 제조업	29-31, 34, 42	41-49, 68-71, 91-97
15	서비스	43-57	

자료: 저자 작성.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1) 농업 부문에서 민감 및 특별 품목의 선정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민감 또는 특별 품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감 또는 특별 품목 선정의 일반적 기준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Jean *et al.* (2008)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Jean *et al.*(2008)은 세계 관세율자료와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HS 2단위기준으로 02류(축산물), 10류(곡물), 08류(과일), 17류(설탕)가 공통의 민감품목이다. 개도국의 경우는 02류, 10류, 12류(식물성 유지), 24류(담배) 등이 공통의 민감품목이다(표 4-5 참고).⁸¹⁾

그러나 이렇게 선정된 HS 6단위 기준의 12~15개의 민감품목은 4차 의장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의 개수에 모자란다.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대략 선진국은 25개, 개도국은 34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도국에는 특별품목도 허용되고 있어 개도국 특별품목의 수는 HS 6단위로 최대 76개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민감 및 특별 품목의 선정은 서진교 외(2009)에서 구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즉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개 선진국은 WTO에 제시한 소비량 자료를 이용해 민감품목은 선정했고 개도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이미 선정된 민감품목에 추가하여 양허관세, 실행관세, 무역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선정하였다.⁸²⁾

81) 이러한 공통의 민감품목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과정은 서진교 외(200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4-5. 세계 공통의 민감품목

		선진국	개도국	
1	0201 30	쇠고기(신선·냉장/정육)	2402 20	담배
2	0202 30	쇠고기(냉동/정육)	2208 30	위스키
3	0207 14	가금육(냉동/설육 포함)	2203 00	맥주
4	0406 90	치즈(신선 제외)	1701 99	설탕(캔/무)
5	0603 10	절화	2204 21	포도주
6	0702 00	토마토(신선·냉장)	2208 70	주류
7	1001 90	밀과 메슬린	2208 90	에틸알코올
8	1701 11	원당	0207 14	가금육(냉동/설육 포함)
9	2106 90	기타 조제식품	2403 10	담배
10	2202 90	음료(비알코올)	2106 90	기타 조제식품
11	2204 29	포도주스	2208 60	포도주스
12	2402 20	담배	1006 30	쌀(정미)
13			1701 11	원당
14			1806 31	초콜릿과 그 조제품
15			1806 90	초콜릿과 그 조제품

자료: Jean *et al.*(2008, p. 14)에서 인용.

2) 관세감축

농업 분야의 모델리티 4차 의장수정안은 관세감축에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WTO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최소 50%, 최대 70%를 감축하며,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의 2/3가 적용되어 최소 33.3%, 최대 46.7%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이며, 개도국은 10년이다(표 4-6). 따라서 민감 또는 특별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일반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양허세율 수준별로 일반 관세감축률의 1/2을 적용하였다.⁸³⁾

82) 서진교 외(2009)의 부록에 국별 민감 및 특별 품목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개도국 특별품목은 관세감축 면제비율을 최대 5%로 잡고, 전체 평균 관세감축률을 11%로 맞추기 위해 관세감축이 면제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9% 감축률을 적용하였다.⁸⁴⁾

표 4-6. 농산물 관세감축 공식

(단위: %)

구간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	0~20	50	0~30	33.3
2	20~50	57	30~80	38.0
3	50~75	64	80~130	42.7
4	75 초과	70	130 초과	46.7

자료: WTO(2008a).

3) NAMA 관세감축과 미양허품목의 처리

NAMA의 선진국 관세감축은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조정계수 8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개도국은 20, 22, 25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개도국에 적용될 계수로 중간값인 22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EU, 여타 선진국들의 관세감축에는 계수 8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개도국 관세감축에는 계수 22의 스위스 공식⁸⁵⁾을 적용하였다.

8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률은 일반품목 감축률의 1/3, 1/2, 2/3이나 여기서는 1/2을 선택하였다.

84) 32개(감축면제)×0% + 44(감축대상)×19%를 해야 전체 특별품목 76개의 평균감축률이 11%가 된다.

85) 스위스 공식은 초기 관세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축을 하도록 만든 조화방식의 관세감축공식으로서 다음의 식에서 분자 및 분모에 위치한 계수(coefficients) a 가 감축 이후 관세의 최고상한이 됨.

$$T_2 = \frac{a \times T_1}{a + T_1} \quad (\text{단 } T_1 \text{은 초기 관세, } T_2 \text{는 감축 이후 관세})$$

개도국에 적용된 신축성은 계수 22에 상응하는 4차 의장수정안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즉, 계수 22 적용 시 개도국 신축성은 ① 세번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10%(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내)로 설정하되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하거나, ② 세번 수 기준으로 전체의 5%(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5% 이내)로 설정하되 감축에서 제외하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민감품목에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관세를 감축하기보다는 민감품목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 감축면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관세감축면제를 개도국 신축성 방법으로 설정했다.

한편 미양허품목의 경우 100% 양허를 전제로 2001년 MFN 실행세율에 25%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관세로 설정하였다. 다만 여기에도 신축성 제한조항(ACC: Anti-Concentration Clause)에 따라 HS 2단위 기준으로 특정류(chapter) 전체에 융통성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신축성 적용대상인 민감품목은 최근의 실행관세가 높은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해당 실행관세율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세번 중에서 수입액이 큰 순서대로 주어진 한도까지 민감품목을 설정하였다.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질 GDP와 후생

2008년 12월 말에 배포된 농업과 NAMA 모델리티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실질 GDP는 약 1,510억 달러가 증가하여 약 0.27%의 GDP 증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차 의장수정안대로 타결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4차 수정안대로 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실질 GDP가 3.2%(약 1,17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는 실질 GDP가 약 1.5%(18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실질 GDP가 약 51억 달러 증가하여 0.5%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EU와 최빈개도국은 2008년 의장수정안 대로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오히려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EU는 약 52억 달러의 GDP가 감소하여 실질 GDP가 0.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최빈개도국들도 0.03%의 실질 GDP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다른 일반 선진국 및 여타 개도국들의 GDP는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GDP 증가 효과

(단위: 억 달러, %)

구분	실질 GDP		후생	
	증가율	증가액		
자본 축적 모형	전 세계	0.27	1,510.4	1,351.2
	한국	0.48	50.7	37.1
	미국	0.03	40.0	112.8
	EU(28)	△0.03	△ 51.6	△18.0
	중국	3.16	1,168.4	952.2
	브라질	0.17	23.4	25.0
	인도	1.48	182.4	116.1
	여타 선진국	0.08	65.6	108.1
	여타 개도국	0.04	32.9	16.8
	최빈개도국	△0.03	△1.4	1.2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모의실험 결과는 DDA 협상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Decreux and Fontagne(2011)이 있는데 이들은 미라지 동태모형을 사용해서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농업과 NAMA만 관세를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계 수출이 약 1.25% 증가하고, GDP는 약 0.09%(7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이는 농업과 NAMA에서 민감품목을 반영하는 방법의 차이 및 관세감축률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⁸⁶⁾

2) 무역과 산업별 생산

4차 의장수정안 대로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전체의 수출은 약 1.4%(약 1,60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변화와 유사하게 중국과 인도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예상 외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브라질, 기타 선진국과 기타 개도국 모두가 완만한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⁸⁷⁾

중국은 4차 의장수정안대로 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출이 5.9%(약 824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인도는 6.5%가 증가해 약

86) 최빈개도국의 경우 무관세-무쿼터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이를 반영하면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7) 최빈개도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4-8.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수출증대 효과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액		
	증가율	증가액	
자본 축적 모형	전 세계	1,38	1,603,8
	한국	1,02	37,9
	미국	2,54	348,5
	EU(28)	△0,02	△ 58,5
	중국	5,88	823,6
	브라질	1,39	25,0
	인도	6,52	149,2
	여타 선진국	1,09	201,2
	여타 개도국	0,27	83,1
	최빈개도국	△0,31	△6,1

자료: 저자 작성.

150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출도 약 2.5% 늘어 약 350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최빈개도국은 미미하지만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생산의 변화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와 직물, 수송기기, 전기·전자, 일반 기계 등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농업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제조업에서는 섬유와 전기·전자에서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는 화학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농업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또한 섬유·직물,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에서도 생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농업 전반에서 생산이 증가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DDA 타결의 국별 산업별 생산량 변동 효과

(단위: 백만 달러)

	한국	미국	EU	중국	브라질	인도	기타 선진국	기타 개도국	최빈 개도국
쌀	-97 (-0.5)	-8 (-0.2)	3 (0.07)	969 (1.96)	34 (0.33)	-147 (-0.31)	-272 (-0.70)	-405 (-0.45)	-75 (-0.33)
곡물	-382 (-11.43)	417 (0.5)	-458 (-0.27)	480 (1.32)	402 (1.04)	-34 (-0.05)	-496 (-1.42)	-1,624 (-0.87)	-82 (-0.32)
채소·과일	-383 (-2.84)	-148 (-0.2)	-768 (-0.92)	6,222 (2.77)	42 (1.09)	39 (0.07)	-341 (-0.89)	282 (0.10)	-44 (-0.18)
육류/낙농	-530 (-2.02)	3,122 (0.8)	-12,477 (-1.76)	6,321 (2.12)	7,512 (7.96)	280 (0.28)	-3,538 (-1.68)	-1,017 (-0.17)	-188 (-0.43)
가공식품	-1,119 (-1.86)	417 (0.1)	-4,927 (-0.48)	5,706 (1.46)	1,009 (0.99)	-790 (-0.84)	-1,709 (-0.43)	-631 (-0.09)	-143 (-0.33)
기타농산물	21 (2.13)	-65 (-0.2)	-491 (-1.60)	-391 (-2.18)	217 (0.79)	732 (2.19)	-19 (-0.15)	211 (0.21)	38 (0.36)
채취업	-69 (-0.60)	549 (0.2)	-1,072 (-0.39)	-5,498 (-1.41)	-872 (-1.12)	-758 (-1.21)	-1,920 (-0.53)	-9,676 (-0.57)	-604 (-0.45)
섬유·직물	968 (2.65)	-10,427 (-4.4)	-14,229 (-3.15)	21,551 (4.36)	-592 (-1.51)	2,709 (3.62)	-1,870 (-2.05)	-1,204 (-0.34)	-245 (-0.69)
화학류	-16,688 (-5.93)	41,300 (2.9)	6,703 (0.30)	-107,116 (-10.87)	-1,489 (-0.77)	-4,124 (-1.83)	3,446 (-0.34)	-28,812 (-2.07)	-514 (-1.10)
철강·금속	1,063 (0.72)	-4,927 (-0.8)	-2,949 (-0.23)	11,183 (1.20)	-1,266 (-1.40)	-5,061 (-4.02)	-577 (-0.10)	94 (0.20)	-185 (-0.76)
수송기기	5,157 (3.50)	-2,648 (-0.3)	-13,222 (-0.92)	4,205 (1.17)	-629 (-0.74)	-451 (-0.87)	9,436 (1.40)	-2,851 (-0.71)	-54 (-0.76)
전기/전자	2,272 (1.65)	-9,568 (-1.9)	-92,370 (-2.09)	22,637 (4.57)	-656 (-1.28)	155 (0.67)	-542 (-0.11)	-1,173 (-0.25)	-41 (-1.25)
기계	3,478 (1.71)	-6,682 (-0.7)	-1,537 (-0.08)	884 (0.10)	-936 (-1.82)	-5,218 (-5.14)	977 0.16	5,789 (1.14)	-113 (-0.95)
기타제조업	67 (0.07)	-5,426 (-0.6)	-11,358 (-0.63)	20,861 (2.28)	-322 (-0.29)	434 (0.37)	-3,333 (-0.53)	-3,803 (-0.51)	-132 (-0.38)
서비스	7,392 (0.60)	3,068 (0.02)	-65,370 (-0.31)	81,069 (2.15)	4,554 (0.33)	5,124 (0.44)	10,241 (0.10)	-21,414 (-0.25)	-1,099 (-0.27)

주: () 안은 %.
자료: 저자 작성.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동등성 분석을 위해서 DDA 협상이 2008년 4차 의장수정안 대로 타결되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률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8년 4차 의장수정안 대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관세를 감축하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았다.

1) 농업 분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민감품목을, 개도국은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고려하여 구간별 감축방식에 따라 감축률을 적용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률은 약 26%로 계산되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32%, 52%, 37%로 계산되었

표 4-10.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농업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구분	한국	미국	EU	여타 선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여타 개도국
전체	26.1	32.1	52.0	37.3	12.3	25.1	25.9	27.7
쌀	0.0	50.0	30.5	42.0	0.0	0.4	19.0	14.2
곡물	26.6	28.1	55.4	51.6	3.4	43.4	21.5	32.6
채소·과일	25.1	43.2	51.0	40.3	32.7	41.4	36.2	27.1
육류·낙농	14.6	36.3	57.4	45.6	16.9	39.4	21.1	26.8
가공식품	29.2	28.0	51.2	33.2	10.2	16.9	28.8	27.1
기타 농업	30.9	29.3	51.6	17.0	22.3	42.6	36.3	33.4

자료: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4. 11. 18)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반면 중국은 12%, 인도는 25%, 브라질은 26%, 그리고 여타 개도국은 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감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도국에 주어진 우대에 따른 낮은 감축률 이외의 민감 및 특별 품목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 NAMA 분야

NAMA에서 분야별 감축률을 계산한 결과가 [표 4-11]이다. 우리나라의 NAMA 분야 평균 감축률은 40%로 계산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8.7%, 15.0%로 낮게 계산되었다. EU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감축률이 매우 높게 계산되어 58.4%로 나왔다. 이러한 수준은 인도(52.9%)나 브라질(53.5%)과 유사한 수준으로 EU의 NAMA 분야 양허 관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4-11.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양허세율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EU	여타 선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여타 개도국
전체	40.0	18.7	58.4	23.1	15.0	52.9	53.5	47.8
채취업	60.1	45.8	62.9	41.7	8.8	64.1	58.4	52.2
섬유·직물	37.9	33.3	56.6	30.4	24.6	62.2	57.2	47.5
화학·고무·플라스틱	40.3	19.2	63.1	24.1	23.3	63.4	49.7	56.5
철강·금속	27.9	14.6	66.2	21.5	17.4	68.3	54.7	55.3
수송기기	45.5	17.2	67.3	31.1	15.7	47.1	34.3	49.7
전기·전자	20.1	9.6	42.1	10.2	7.7	25.3	57.4	37.0
일반 기계	34.8	6.2	50.6	12.1	15.1	41.6	57.2	46.5
기타 제조업	42.0	11.7	65.3	21.0	17.8	40.3	54.0	51.9

자료: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M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4. 11. 18)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게 계산한 국별 농업 및 NAMA 부문 관세감축률을 수입액 기준으로 하여 농업 부문 및 NAMA 분야 단일의 감축률을 계산하면 선진국 농업 부문 관세감축률은 36%로 계산되었으며, NAMA 분야 단일 관세율은 24%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은 농업 부문 평균 관세감축률은 28%로 나타났으며, NAMA 분야는 48%로 나타났다.

나. 동등성 분석

동등성 분석이란 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관세감축률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동등성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 분류는 비교대상인 4차 의장수정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최소감축률은 고려하지 않고 평균 감축률 위주로 4차 의장수정안과 동등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감축률을 찾아보았다. 다만 농업 부문과 NAMA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관세감축률이 다를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다.

초기 농업과 NAMA의 평균관세율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농업 부문 30%, NAMA 40%에서 시작하여 농업은 10~50%까지 범위에서, NAMA는 40~50%까지의 범위에서 동등성을 분석해 보았다. 선진국의 관세감축률이 정해지면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의 2/3로 자동 결정되는 방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동등성 분석은 세계 GDP 증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등성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차 의장수정안대로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GDP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 0.27% 증가한다. 농업 부문에서 선진국의 관세

감축률을 30%로 할 때 세계 GDP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NAMA 분야 감축률은 43%로 나타났다.

세계 GDP 증가율은 유사하지만 그 분배현황은 4차 의장수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집중된 GDP 증가효과가 다른 나라로 이전되어 전체적으로 GDP 증가혜택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르면 GDP 증가율이 3.2%에 달하였지만 평균감축률이 적용되면 1.7%로 낮아져 약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1.5%에서 1.2%로 약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0.5%에서 1.0%로 약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브라질을 포함하여 여타 개도국과 여타 선진국 모두가 4차 의장수정안보다 높은 GDP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또 다른 관세감축률 조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농업 분야 관세감축을 10%포인트 변화시킬 때 동등한

표 4-12. 동등성 분석: 농업 30%, NAMA 43%

(단위: 억 달러, %)

구분	의장 4차 수정안		농업 30%, NAMA 43%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자본 축적 모형	전 세계	0.27	1,510.4	0.27	1,516.7
	한국	0.48	50.7	1.04	108.9
	미국	0.03	40.0	0.01	8.3
	EU(28)	△0.03	△ 51.6	0.00	2.8
	중국	3.16	1,168.4	1.70	628.1
	브라질	0.17	23.4	0.44	60.1
	인도	1.48	182.4	1.21	149.1
	여타 선진국	0.08	65.6	0.16	125.6
	여타 개도국	0.04	32.9	0.48	435.1
	최빈개도국	△0.03	△1.4	△0.03	△1.4

자료: 저자 작성.

GDP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NAMA 분야 관세감축률은 약 1%포인트씩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 관세감축률을 30%에서 40%로 10%포

표 4-13. 동등성 분석: 농업 40%, NAMA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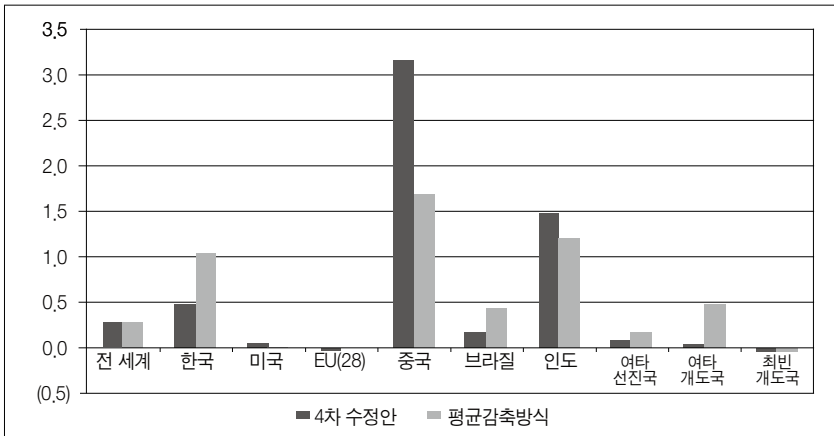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의장 4차 수정안		농업 40%, NAMA 42%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전 세계	0.27	1,510.4	0.27	1,521.7
한국	0.48	50.7	1.12	117.2
미국	0.03	40.0	0.00	6.2
EU(28)	△0.03	△ 51.6	0.00	2.0
중국	3.16	1,168.4	1.66	615.1
브라질	0.17	23.4	0.49	66.6
인도	1.48	182.4	1.21	149.1
여타 선진국	0.08	65.6	0.18	139.2
여타 개도국	0.04	32.9	0.47	428.0
최빈개도국	△0.03	△1.4	△0.04	△1.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제4차 수정안과 평균 관세감축방식의 GDP 증가효과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인트 증가시키고, NAMA 관세감축률을 43%에서 42%로 1%포인트 낮출 경우에 세계 GDP 증가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분산되는 효과는 여전히 유사하였다. 즉,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는 분석대상 모든 국가의 GDP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동등성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

한편 4차 의장수정안의 경우와 관세감축률을 비교한 것이 [표 4-14]이다. 실질감축률 기준으로 농업은 30%, NAMA는 43%(개도국은 농업 20%, NAMA 29%)를 감축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농업은 미국만 평균감축률(30%)보다 높으며 그 외 국가는 모두 평균감축률보다 낮았다.

표 4-14. 제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NAMA 분야 관세감축률(실질 관세율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EU	여타 선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여타 개도국
농업 전체	15.2	38.4	25.7	31.4	21.0	10.4	1.0	9.4
쌀	0.0	50.0	0.0	3.0	0.0	0.4	0.0	8.7
곡물	19.1	28.0	3.3	17.4	6.5	6.4	0.6	20.6
채소·과일	20.9	45.2	29.8	38.4	58.8	10.7	0.8	6.2
육류·낙농	18.0	34.4	44.1	42.4	28.9	20.6	4.7	13.5
가공식품	12.6	38.6	25.6	29.6	17.7	10.4	0.7	5.0
기타농업	11.1	29.3	8.1	11.8	26.2	0.6	0.0	7.1
NAMA 전체	23.9	18.7	27.4	9.8	58.4	34.3	8.8	9.1
채취업	8.5	2.9	6.8	5.6	15.4	15.5	0.6	0.9
섬유·직물	21.1	36.1	32.3	23.9	48.2	29.9	23.6	13.1
화학·고무·플라스틱	49.4	32.1	22.4	15.7	56.0	49.8	11.0	10.1
철강·금속	47.9	44.7	23.9	20.9	45.7	52.0	16.4	9.5
수송기기	25.1	17.2	44.1	16.1	34.6	41.8	5.3	11.9
전기·전자	16.3	16.5	36.3	2.0	82.7	69.6	12.9	12.0
일반 기계	30.5	10.4	27.9	3.2	69.3	60.8	7.1	6.7
기타 제조업	31.8	21.1	30.9	14.0	56.5	32.1	11.8	9.7

자료: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MTS/M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4. 11. 18)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AMA의 경우는 중국과 인도만이 평균감축률보다 높았고, 나머지 국가는 낮았다. 결국 평균감축률을 적용했을 때 인도나 중국의 GDP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4차 의장수정안에 비해 감축률이 작아졌기 때문이고 (관세감축률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 내 왜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은 4차 수정안에 비해 실질감축률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4차 수정안보다 GDP 증가율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등한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갖는 농업 및 NAMA 관세감축률간의 관계를 보면 [표 4-15]와 같다. 동등성 분석에서 구한 평균감축률은 실제 관세를 감축하는 효과를 갖는 실행관세감축률이다. 따라서 이를 양허관세감축률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양허관세 환산을 위해 CGE 분석에서 사용한 양허관세감축률과 실행관세감축률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양허관세감축률 대비 실행관세감축률의 비는 약 0.8336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관세감축률 30%를 양허관세 기준감축률로 바꾸면 대략 36% 수준이다.⁸⁸⁾ 공산품의 경우 양허관세감축률 대비 실행관세감축률의 비는 약 0.6773으로 공산품 43% 관세감축률은 양허관세로 약63% 감축률에 해당한다.

농업과 NAMA 간의 관세감축률간 동등성 분석에서 유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농업과 NAMA 간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관세감축률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협상에서 농업이나 NAMA 내부의 균형은 물론 농업과 NAMA 간 이익의

88) 단 개도국의 실행관세감축률과 양허관세감축률 간의 차는 선진국보다 크기 때문에 개도국의 전환계수를 사용하면 농산물 관세감축률 30%는 약 80%의 양허관세감축률에 해당한다.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언급이 종종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그와 같은 농업과 NAMA 간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관세감축률간의 주고받기식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업 부문의 관세감축률을 10%포인트 변화하는 것이 NAMA 분야 관세감축률을 1%포인트 변화시키는 것과 동등하고 이러한 이유로 농업과 NAMA의 관세감축률간 거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⁸⁹⁾

표 4-15.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 간의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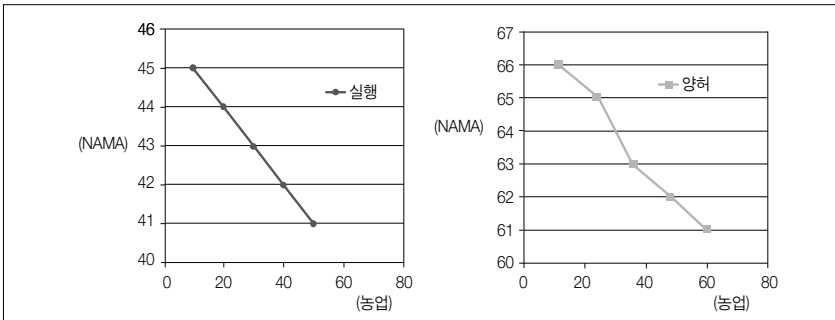
		선진국 감축률				
농업	10 (12)	20 (24)	30 (36)	40 (48)	50 (60)	
NAMA	45 (66)	44 (65)	43 (63)	42 (62)	41 (61)	

주: () 안은 양허관세 기준 감축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동등성 분석: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실행 및 양허 관세)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89) 단 이러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즉 여기서는 농업 부문에서 국내 농업보조의 감축효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보조 감축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동등성 수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시사점

동등성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대책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 GDP 증가를 기준으로 4차 의장수정안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이 기존 4차 의장수정안에 비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보다 균등히 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우월한 관세감축방식일 수 있다. 즉 기존 4차 의장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GDP가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주요국의 관세감축률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차 의장수정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면 GDP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중국과 인도가 평균 감축방식을 따를 경우 오히려 실질 관세감축률이 줄어들어 그만큼 개방 폭이 축소되고 이는 무역왜곡 정도를 높여 GDP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와 반대로 실질 감축률이 높아져 그만큼 개방 폭이 커지지만 그에 따라 무역왜곡 정도가 축소되고 GDP 증가 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대책도 기존 4차 의장수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평균적인 관세감축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증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DDA의 무역자유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는 개도국에도

유리한 관세감축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빈개도국의 GDP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최빈개도국 관심 사항인 무관세-무쿼터와 면화문제 해소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⁹⁰⁾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최소감축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획일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따른다고 해도 민감품목에 최소감축률을 적용하면 실질감축률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평균감축률 방식이 갖는 무역자유화 혜택의 분산성은 상당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으로 농업과 NAMA 간 관세감축률의 거래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순수하게 GDP 증가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농업의 관세감축률을 축소하기 위해 NAMA의 관세감축률을 높이는 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며(농업 부문의 관세감축률 10%포인트 변화와 NAMA의 관세감축률 1%포인트 변화가 동일함) 이 때문에 협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으로 NAMA의 관세감축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 부문의 관세감축률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관세감축률에 기초해 농업과 NAMA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우리나라 역시 농업과 NAMA 각각 독립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90) 실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할 경우에 최빈개도국의 실질 GDP가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발리 패키지와 발리 각료회의 이후 최근까지의 DDA 협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은 크게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 대책은 2015년 7월 까지 작성될 예정인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협상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물론 2015년 말로 예정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도 단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중장기 대책은 DDA 협상이 적어도 2017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해야 하는 대책이다. 2015년 7월 말까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이 만들어지고, 2015년 말까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보조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이 도출된다면 그다음은 만들어진 작업계획에 따라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2016년 말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DDA 협상이 201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와 중장기에 예상되는 주요 협상쟁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 쟁점은 우선 선진국의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변화는 다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과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단기에 있어 또 다른 협상쟁점은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개도국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과도한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지 않는 이상 선진국들의 DDA 협상 타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결국 무역자유화에 관한 한 WTO 다자체제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별로 잃을 것이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시장개방을 미루는 것은 물론 선진국이 원하는 부분의 시장개방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복수국간 협상과 Mega-FTA를 통해서 상당부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복수국간 협상(TiSA)이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호주 등이 주도하는 TiSA에서 시장개방 폭은 종전 DDA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TPP나 TTIP도 선진국들이 자기들만의 이해를 반영하여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개도국으로서는 WTO 외에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일부 과도한 개도국 우대는 남남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도국 사이에서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개도국 우대 축소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도 중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EU가 제시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이 중요하며, DDA 협상 최종 절충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개발문제를 또 다른 중장기 쟁점으로 볼 수 있다.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2014년 DDA 협상에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DDA가 출범한 이후 세계무역 및 농업정책

의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향후 협상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이른바 ‘워터(water)’라고 하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시장접근문제와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보조의 증가문제가 내재해 있다.

워터란 보통은 개도국에 해당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사이에 격차가 커서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 매우 큰 감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실행관세에 영향을 줄 수 없어서 실제 시장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 문제는 과거에는 재정에 여유가 없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 부문에 조세를 부과해 왔던 개도국들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농업 부문에 가격지지 등과 같은 감축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선진국들은 최근 개도국의 무역왜곡보조가 급증하고 있으며, 절대적 규모로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보조 감축 논의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에 따르면 관세감축은 농업이나 NAMA 모두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정립할 수 있다.

WTO, ITC, UN(2014)의 세계관세분석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일부 케언스국가와 EFTA 국가를 제외하고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가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관세가 낮기 때문에 절대적인 크기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는 비율은 물론 절대적인 크기에서도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 차이가 있었다. 반면 그 외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진국들의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은 단순 평균으로 61.3%였으며, 농산물과 공산품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산물은 65.1%, 공산품은 58.9%). 또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절대적인 차이는 5.6%포인트였으며, 농산물은 21.5%포인트, 공산품은 3.2%포인트로 나타나 선진국도 농산물에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대만, UAE, 베트남 등 2000년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가 상당히 컸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18.6%에 불과하였고 절대적인 차이도 3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절대적인 관세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의 관세 차이는 실제 23.5%포인트 차이가 나서 농업 부문은 워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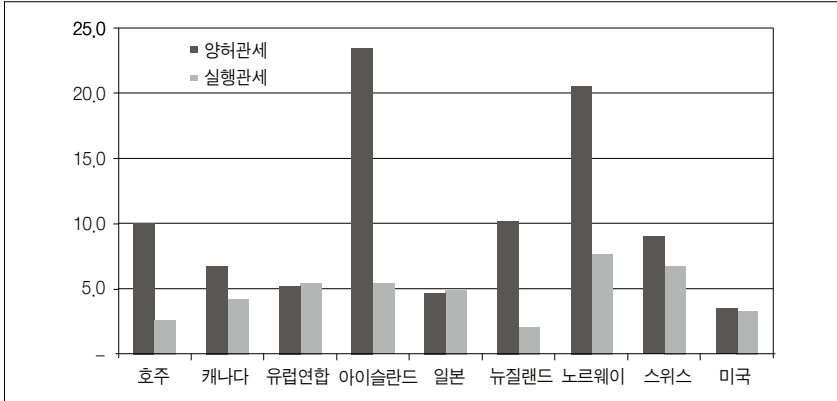
개도국 전체로 보아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 비율을 계산하면 40.9%로 나타나 선진국과는 약 20.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도 16%포인트로 선진국의 5.5%포인트와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이 있으며, 개도국은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림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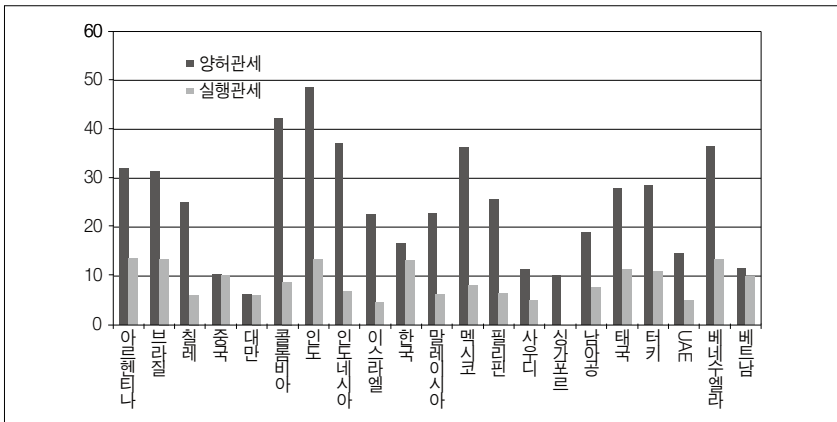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전체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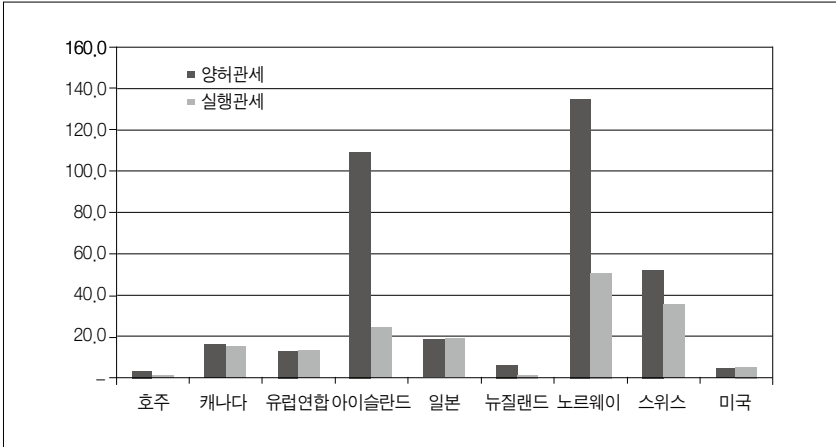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5-3.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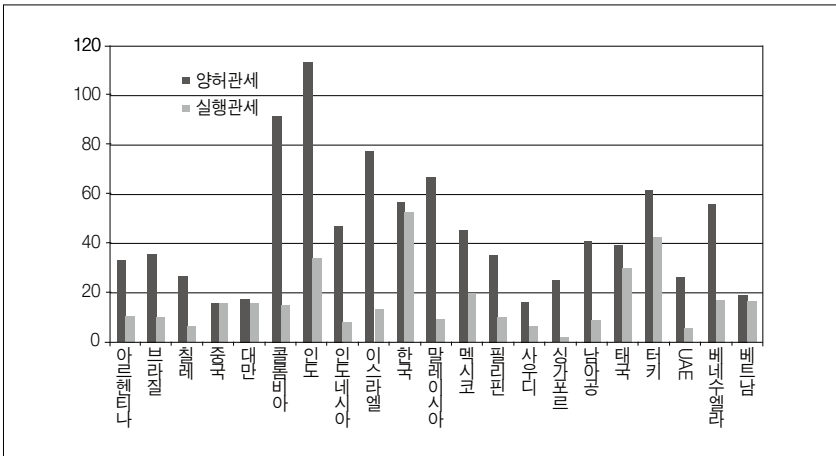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5-4.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농산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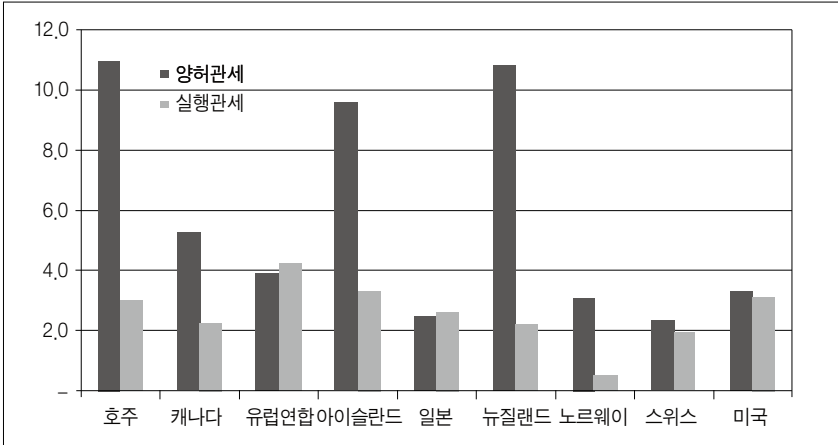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5-5. 주요 선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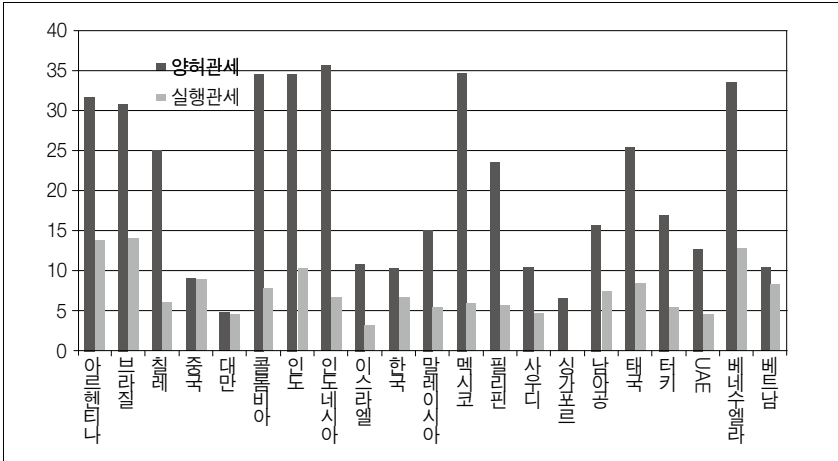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5-6. 주요 개도국의 양허 및 실행 관세: 공산품(2013년)

(단위: %)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5-1. 주요 선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2013년)

(단위: %)

		양허관세			실행관세			실행관세/양허관세			양허관세-실행관세		
		전체 (A)	농산물 (B)	공산품 (C)	전체 (D)	농산물 (E)	공산품 (F)	D/A	E/B	C/F	(A-D)	(B-E)	(C-F)
선진국	호주	10.0	3.5	11.0	2.7	1.2	3.0	27.0	34.3	27.3	7.3	2.3	8.0
	캐나다	6.8	16.8	5.3	4.2	15.9	2.3	61.8	94.6	43.4	2.6	0.9	3.0
	유럽연합	5.2	13.5	3.9	5.5	13.2	4.2	105.8	97.8	107.7	-0.3	0.3	-0.3
	아이슬란드	23.5	109.4	9.6	5.4	24.3	3.3	23.0	22.2	34.4	18.1	85.1	6.3
	일본	4.7	19.0	2.5	4.9	19.0	2.6	104.3	100.0	104.0	-0.2	0.0	-0.1
	뉴질랜드	10.2	6.1	10.8	2.0	1.4	2.2	19.6	23.0	20.4	8.2	4.7	8.6
	노르웨이	20.5	135.2	3.1	7.7	51.3	0.5	37.6	37.9	16.1	12.8	83.9	2.6
	스위스	9.0	52.6	2.3	6.8	35.7	1.9	75.6	67.9	82.6	2.2	16.9	0.4
	미국	3.5	4.9	3.3	3.4	5.3	3.1	97.1	108.2	93.9	0.1	-0.4	0.2
	평균							61.3	65.1	58.9	5.6	21.5	3.2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5-2. 주요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2013년)

(단위: %)

		양허관세			실행관세			실행관세/양허관세			양허관세-실행관세		
		전체 (A)	농산물 (B)	공산품 (C)	전체 (D)	농산물 (E)	공산품 (F)	D/A	E/B	C/F	(A-D)	(B-E)	(C-F)
개도국	아르헨티나	31.9	32.6	31.8	13.4	10.1	13.9	42.0	31.0	43.7	18.5	22.5	17.9
	브라질	31.4	35.4	30.8	13.5	10.2	14.1	43.0	28.8	45.8	17.9	25.2	16.7
	칠레	25.1	26.1	25.0	6.0	6.0	6.0	23.9	23.0	24.0	19.1	20.1	19.0
	중국	10.0	15.8	9.1	9.9	15.6	9.0	99.0	98.7	98.9	0.1	0.2	0.1
	대만	6.3	16.9	4.7	6.0	16.0	4.5	95.2	94.7	95.7	0.3	0.9	0.2
	콜롬비아	42.1	91.6	34.6	8.8	14.9	7.8	20.9	16.3	22.5	33.3	76.7	26.8
	인도	48.6	113.5	34.6	13.5	33.5	10.2	27.8	29.5	29.5	35.1	80.0	24.4
	인도네시아	37.1	47.0	35.6	6.9	7.5	6.7	18.6	16.0	18.8	30.2	39.5	28.9
	이스라엘	22.4	76.7	10.8	4.6	13.2	3.2	20.5	17.2	29.6	17.8	63.5	7.6
	한국	16.6	56.0	10.2	13.3	52.7	6.8	80.1	94.1	66.7	3.3	3.3	3.4
	말레이시아	22.9	66.4	14.9	6.0	8.9	5.5	26.2	13.4	36.9	16.9	57.5	9.4
	멕시코	36.2	45.1	34.8	7.9	19.7	5.9	21.8	43.7	17.0	28.3	25.4	28.9
	필리핀	25.7	35.1	23.4	6.3	9.9	5.7	24.5	28.2	24.4	19.4	25.2	17.7
	사우디	11.2	16.1	10.5	4.8	6.0	4.6	42.9	37.3	43.8	6.4	10.1	5.9
	싱가포르	9.9	24.9	6.5	0.2	1.4	0.0	2.0	5.6	0.0	9.7	23.5	6.5
	남아공	19.0	40.4	15.7	7.6	8.4	7.5	40.0	20.8	47.8	11.4	32.0	8.2
	태국	27.8	38.9	25.4	11.4	29.9	8.3	41.0	76.9	32.7	16.4	9.0	17.1
	터키	28.6	61.0	17.0	10.8	42.4	5.5	37.8	69.5	32.4	17.8	18.6	11.5
	UAE	14.4	25.6	12.7	4.7	5.5	4.6	32.6	21.5	36.2	9.7	20.1	8.1
	베네수엘라	36.5	55.8	33.6	13.3	16.8	12.8	36.4	30.1	38.1	23.2	39.0	20.8
베트남	11.5	19.1	10.4	9.5	16.2	8.3	82.6	84.8	79.8	2.0	2.9	2.1	
평균							40.9	42.0	41.2	16.0	28.3	13.4	

자료: WTO, ITC, UNCTAD(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국(미국과 EU) 및 개도국(중국, 대만, 베트남) 등과 연합해서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관세감축률을 높이자는 주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양허관세의 축소가 곧바로 실행관세 축소에 영향을 주어 실질적인 시장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세감축률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률과 워터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위하여 관세감축률에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반비례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유형의 공식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 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을 요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공식으로 채택한 스위스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스위스 공식은 그 계수가 감축 이후 부과 가능한 관세의 상한이 되므로 60%보다 적은 품목은 낮은 계수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고, 60%보다 큰 품목은 높은 계수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 개도국에도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평균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행관세가 양허관세 대비 80% 수준으로 선진국들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할 경우 감축률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갖는 단점도 있다.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단순히 보호수준의 거품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무역정책상의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수입 급증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행관세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셰이프가드와 같은 조치가 있긴 하지만 통보나 협의 또는 보상과 같은 추가적 절차나 의무부담 없이 자국의 권한 내에서 일정 부분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내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일정 부분 감안한 제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20% 수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를 20%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DDA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는 주로 선진국의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개도국들은 일방적으로 선진국들의 무역왜곡보조를 철폐

하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상당부분 반영되어 과거 UR 농업협상과 달리 감축보조(AMS) 이외 최소화허용보조(DM: De Minimis)와 블루박스보조(BB: Blue Box) 각각의 상한이 축소됨은 물론 이들 보조를 합한 이른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의 감축까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8년 4차 의장수정안은 감축보조 이외에도 무역왜곡 보조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WTO에 통보된 주요국의 농업보조자료에 기초하여 케언스그룹이 발표한 농업보조지급동향을 보면 2008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총무역왜곡보조(TTDS: Tota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⁹¹⁾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의 총무역왜곡보조는 WTO 가입 당시인 2001년에 3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6년에는 약 20억 1,000만 달러, 2008년에는 13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도의 농업보조지급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총무역왜곡보조는 2001년 82억 5,000만 달러에서 2008년 현재 376억 2,000만 달러에 이르러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의 총무역왜곡보조는 2001년 13억 1,000만 달러에서 2011년 53억 8,000만 달러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36억 5,0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91) 여기서 총무역왜곡보조란 허용보조를 제외한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농업보조를 합한 것(AMS+De Minimis+BB)금액이다.

표 5-3. 주요국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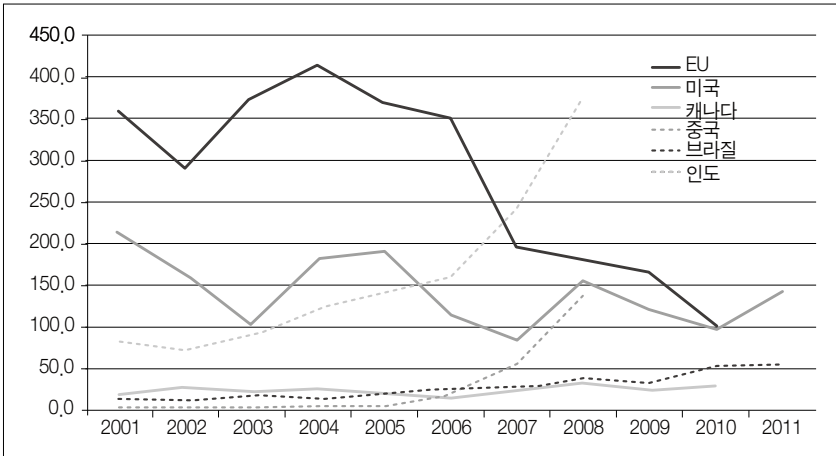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U	360.74	290.02	373.35	413.97	368.83	350.57	196.51	182.93	167.62	102.94	-
미국	215.36	163.28	101.87	180.87	189.23	113.43	85.20	156.37	121.24	100.0	143.68
호주	1.65	1.27	1.29	1.63	1.69	1.60	2.97	1.37	0.48	0.80	-
캐나다	20.06	24.77	21.87	24.77	21.58	19.39	28.23	31.27	25.70	29.42	-
일본	64.33	65.58	62.16	62.19	57.55	50.84	41.86	60.08	72.02	-	-
중국	3.20	1.87	3.15	7.49	5.68	20.10	54.53	138.56	-	-	-
브라질	13.07	14.08	18.13	15.24	20.06	24.15	28.91	36.38	32.42	51.31	53.81
인도	82.53	73.41	90.26	121.58	141.77	160.92	243.42	376.15	-	-	-
인도네시아	0.0	0.0	0.93	1.40	2.76	3.60	7.37	16.67	19.18	22.65	18.75
한국	4.23	6.30	5.41	4.71	5.90	4.97	8.48	7.67	-	-	-

주: 총무역왜곡보조는 품목 특정 및 불특정에 관계없이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보조(BB)를 포함한 보조를 의미한다.

자료: Cairns Group(2014).

그림 5-7.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총무역왜곡보조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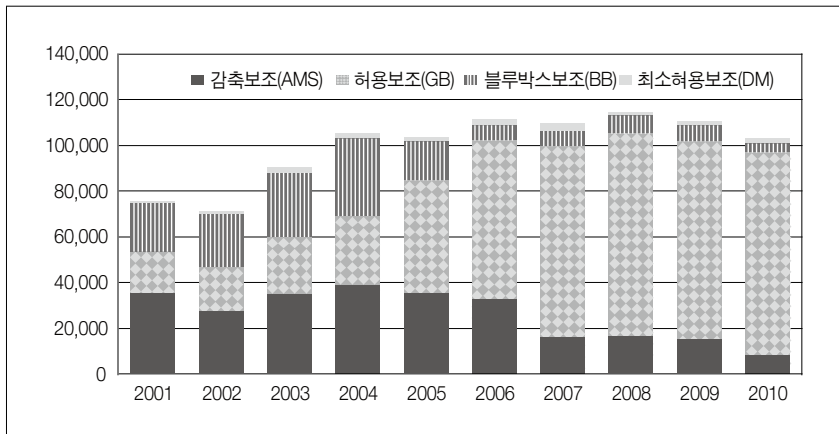
자료: Cairns Group(2014).

반면 전통적인 농업보조국인 선진국의 총무역왜곡보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1년 215억 4,000만 달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143억 7,000만 달러로 중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인도의 38%에 불과하다. EU도 이와 유사하여 2001년 360억 7,000만 달러에서 2010년 102억 9,000만 달러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적다. 캐나다와 일본의 총무역왜곡보조도 2001년과 최근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무역왜곡보조총액의 추이를 볼 때 선진국의 농업보조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회원국이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은 최빈개도국이나 저소득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이를 적극 지지하기도 어려워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8. EU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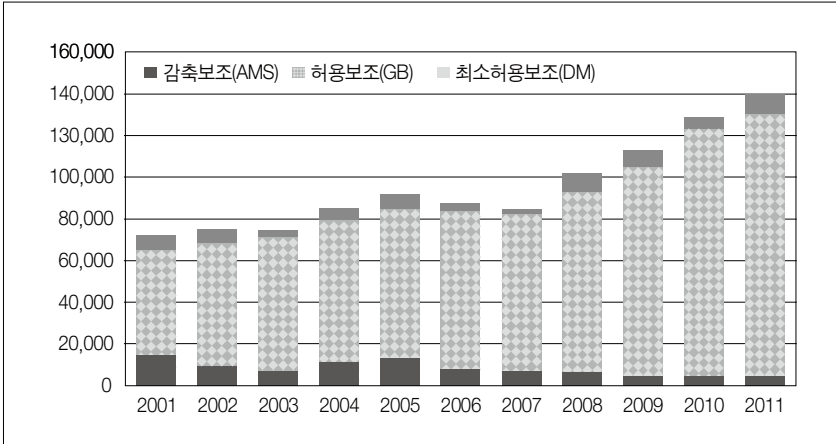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그림 5-9. 미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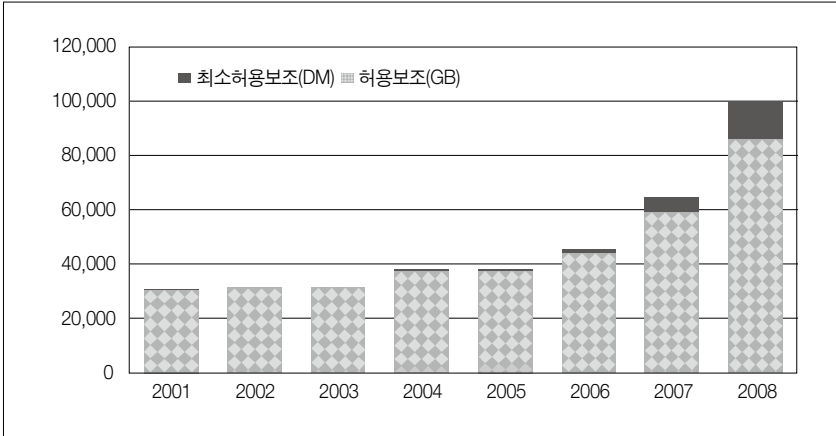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한편 이러한 총무역왜곡보조는 허용보조(GB: Green Box)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 전체의 보조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따라 허용대상보조를 포함하여 보조형태별로 총농업보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허용대상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감축보조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 감축보조(AMS)는 없으며, 주로 허용보조와 최소허용보조(DM)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최소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허용보조는 설정된 상한(총생산액의 10%)을 초과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감축보조(AMS)로 산입되게 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도국은 감축대상보조의 상한이 0이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가 상한을 넘는 순간 UR 농업협정문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5-10. 중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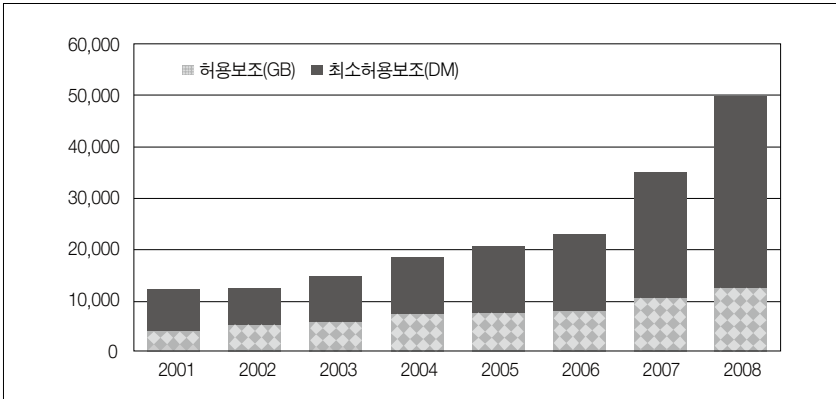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그림 5-11. 인도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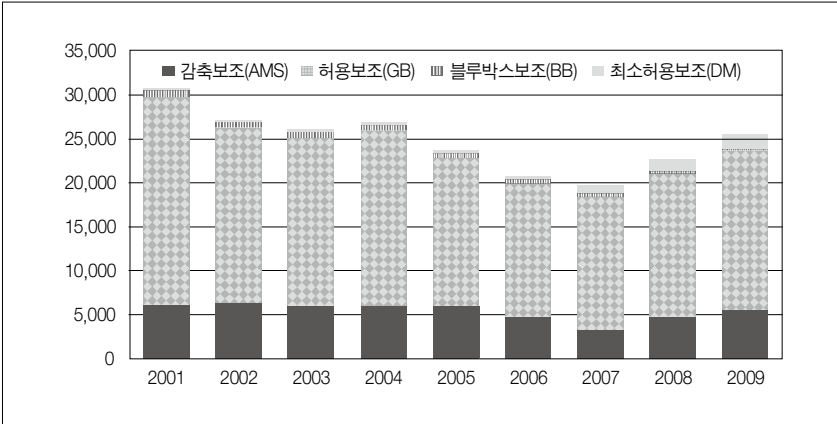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농업보조 추이를 보이고 있어 최소허용보조가 전체 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림 5-12. 일본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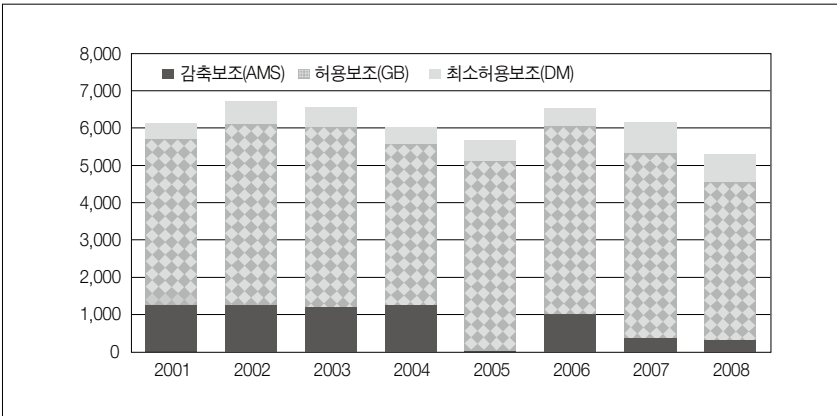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그림 5-13. 한국의 농업보조형태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airns Group(2014)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이를 종합하면 개도국의 농업보조, 특히 감축보조 증가에 대한 선진국의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자칫 UR 농업협정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개도국에 허용된 감축보조가 없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 이내에서만 감축보조를 운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도국들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UR 농업협상 당시 보조금을 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개도국은 감축보조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이행계획서상 감축보조는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대로 상한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들은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허용보조 상한을 초과하는 감축보조를 운용할 수 없다. 반면 그때까지 감축보조를 지급해 오던 선진국은 그들이 지급하던 감축보조의 최대치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해당 상한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감축보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감축보조정책 운용상 근본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개도국이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개도국에 대한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것도 적절한 협상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나 이를 통해 개도국 전반에 대해 감축보조의 상한이 재설정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감축보조 상한도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 논의될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 즉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기준 기간의 변경이나 최소허용보조의 상한 인상, 또는 새로운 허용보조의 도입 등과 같은 방안은 사실 UR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비축은 가격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보조로 인정해 주는 것은 허용 보조 분류 기준(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할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더욱이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감축의 기준이 되는 감축보조의 상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감축보조의 의무이행 기준이 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도 최소허용보조의 상한 인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0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공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차원이고 UR 농업협정의 다른 근본 원칙을 손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재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감축보조 상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축보조 상한은 국내외 가격 차에 가격지지를 받은 물량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감축보조를 계산할 때 해당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생산량 전체로 해서 감축보조의 상한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1) 농업

① 특별품목의 축소

농업 부문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우선적인 목표는 특별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현행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 브라질 등이 개도국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자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왔다.

현행 4차 의장수정안은 특별품목 개수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12%를 지정하였으며, 특별품목에 대한 감축률도 평균 11%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품목그룹이라고 알려진 G33은 4차 의장수정안이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나타난 모든 쟁점을 조정해 만들어진 타협의 결과물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G33의 대표인 인도네시아는 DDA 협상의 최종 합의단계에서 각료들에 의해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가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강한 압박에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는 모델리티 4차 의장수정안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품목 수보다 대우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특성상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곡물류(2: 쌀, 대두), 채소류(9: 배추, 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과일(4: 사과, 포도, 감귤, 감), 축산물(5: 돼지, 쇠고기, 닭, 젓소, 오리) 등 21개 품목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21개 주요 품목 중 관세가 89% 이상 고율인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1,610개 중 60~70개로 세번 수 기준 4%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조정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표 5-4.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수정안의 특별품목 규정

개 수	대우
전체 세번의 12%	- 특별품목 전체의 평균 관세감축률은 11%가 되도록 함 - 전체 세번의 5%에 대해서 관세감축 면제를 허용

자료: WTO(2008a).

5%를 초과해서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한계보호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품목의 수로 전체 세번의 5% 수준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대우 문제이다. 현행 4차 의장수정안은 12%를 설정할 경우 5%까지는 관세감축 의무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쌀(품목 수 16개)의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1%는 관세면제를 확보해야 하며, 그 외 중요 품목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 5-5. 품목별 농업생산액 (2010~12년 평균)

(단위: 조 원, %)

품목	생산액	비중	누적
농업생산액	42,45	100,0	-
미곡	7,64	18,0	18,0
돼지	5,07	11,9	29,9
한·육우	3,80	8,9	38,9
닭(계란)	3,56	8,4	47,3
젖소(우유)	1,84	4,3	51,6
고추	1,50	3,5	55,2
오리	1,30	3,1	58,2
쌀기	1,04	2,5	60,7
감귤	0,92	2,2	62,8
수박	0,87	2,0	64,9
배추	0,81	1,9	66,8
사과	0,80	1,9	68,7
토마토	0,77	1,8	70,5
감	0,75	1,8	72,3
콩	0,59	1,4	73,7
마늘	0,55	1,3	75,0
포도	0,52	1,2	76,2
참외	0,47	1,1	77,3
오이	0,46	1,1	78,4
무	0,43	1,0	79,4
양파	0,41	1,0	8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2~3% 안팎의 관세감축 의무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 품목이 축소된다면 그 수보다는 대우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에 대한 4차 의장수정안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 5-6. 주요 품목의 관세율과 세번 수

품목	관세율(%)	HS 10단위 세번 수*	비중(%)
총계	-	1,610	100.0
미곡	513	16	1.0
돼지	22~25	24	1.5
한·육우	40	21	1.3
닭(계란)	20~27	33	2.0
탈지, 전지분유	176	6	0.4
연유, 버터밀크, 버터	89	8	0.5
유장	49.5	23	1.4
치즈	36	14	0.9
고추	270	7	0.4
오리	20~25	19	1.2
떨기	45	5	0.3
감귤	144	4	0.2
수박	45	1	0.1
배추	27	6	0.4
사과	45	5	0.3
토마토	45	8	0.5
감	45~67.5	3	0.2
콩	487	13	0.8
마늘	360	6	0.4
포도	45	5	0.3
참외	45	2	0.1
오이	27	3	0.2
무	27	2	0.1
양파	135	4	0.2
계	-	238	14.8

주: * 해당 품목의 HS 10단위 세번 수는 저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통해 회원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안정화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수정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축소·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대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감축 의무면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② 관세상한(Tariff Cap)

특별품목은 개도국에만 주어진 우대조치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밀접히 관련되며, 아울러 관세상한 문제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관세상한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고율의 농산물 관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규정이다.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르면 관세상한으로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가 제시되어 있다. 단 민감품목과 개도국의 특별품목, 그리고 일부 비(非)민감품목에는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TRQ를 보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표 5-7. 농업협상 세부원칙 제4차 의장수정안의 관세상한 규정

상한 설정	선진국 100%	개도국 150%
적용 예외	- 민감품목에는 관세상한을 적용하지 않되 대신 TRQ를 추가증량(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 관세상한적용을 제외하지는 안이 잔여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EFTA 국가에 한정	- 민감품목에는 관세상한을 적용하지 않되 대신 TRQ를 추가 증량(소비량의 0.33%) - 개도국 특별품목에는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WTO(2008a).

관세상한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 대 개도국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결하는 구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G10 등 전형적인 농산물 수입국은 관세상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관세상한 설정 자체의 논의는 막지 못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 추가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출국들은 NAMA와의 형평성을 고려해⁹²⁾ 농업에도 반드시 관세상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감품목은 민감성을 감안하여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되 대신 TRQ를 추가로 증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에 기초해 볼 때 관세상한 도입 자체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에 대해 관세상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도 회원국들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소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율관세 품목 역시 소수에 집중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협상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강한 톤으로 관세상한 설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상한 설정이 대세라면 그를 반대하기보다는 관세상한이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어 관세상한 적용의 예외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협상대책은 최소한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만큼은 관세상한 적용배제를 확보하는 것이

92) NAMA의 관세감축공식으로 제시된 스위스 공식은 그 계수가 관세상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되어야 한다. 특히 관세상한 적용배제가 특별품목에 대해 관세감축 면제를 확보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의제를 연계해서 일관성 있는 협상대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AMA

2008년 NAM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감축공식으로 개도국은 계수 20, 22,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되 개도국 우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표 5-8 참고).

이에 대해 선진국은 최근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개도국에 신축성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계수를 다소 높여 주는 계수 25의 스위스 공식으로 관세감축방식을 통일시키고(이는 민감품목 등 개도국 우대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 그동안 논의해 왔던 분야별 무세화(sectoral)는 이해당사국끼리 R/O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은 계수 25의 스위스 공식을 개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4차 의장수정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들에 허용된 신축성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표 5-8. NAMA 개도국 관세감축률(2008년 모델리티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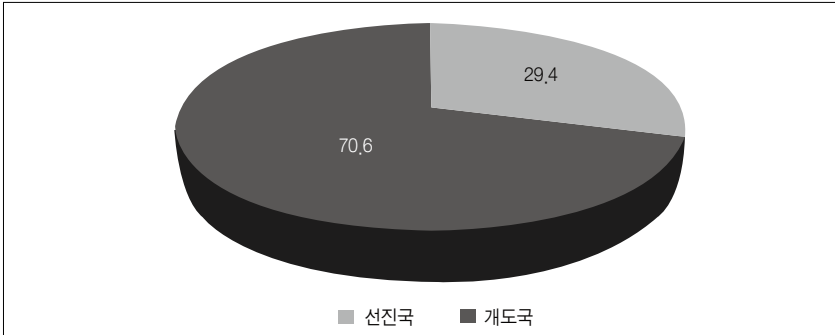
일반 품목 관세감축률	개도국 우대(신축성 부여=민감품목 인정)		
	범위	감축률	전제 조건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NAMA 세번의 최대 14%	계수 20 적용 시 감축률의 1/2	NAMA 수입액의 16% 이하
	NAMA 세번의 최대 6.5%	미양허 또는 감축 면제	NAMA 수입액의 7.5% 이하
계수 22의 스위스 공식	NAMA 세번의 최대 10%	계수 22 적용 시 감축률의 1/2	NAMA 수입액의 10% 이하
	NAMA 세번의 최대 5%	미양허 또는 감축 면제	NAMA 수입액의 5% 이하
계수 25의 스위스 공식	없음		

자료: WTO(2008b).

일단 스위스 공식에 기초한 관세감축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의 계수가 작을수록(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적을수록(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우리 경제 및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³⁾ 이는 NAMA 분야에서 수출국의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특성상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클수록(공식 계수가 작을수록) 시장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민감품목의 범위)이 축소될수록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여전히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 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계수)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공산품 수출은 85류(전기기기, TV, VTR), 87류(일반차량), 84류(보일러, 기계류), 27류(연료, 에너지) 등 4개

그림 5-14. 우리나라의 2011~13년 평균 대개도국 수출 비중(비농산물)

(단위: %)



주: 1) 비농산물은 편이상 제3류(수산물)와 제25류 이상의 품목으로 가정.

2) 개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27 이외 국가로 가정.

자료: UN Comtrade(2014), Statistics Databas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6. 17)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3) 송백훈, 양주영(2008).

표 5-9.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단위: 억 달러, %)

HS 2단위(류)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85 (전기기기, TV, VTR)	948	24.5	24.5
87 (일반 차량)	391	10.1	34.6
84 (보일러, 기계류)	381	9.8	44.4
27 (연료, 에너지)	367	9.5	53.9
89 (선박)	323	8.3	62.2
90 (광학, 의료, 검사, 정밀기기)	303	7.8	70.0
39 (플라스틱)	230	5.9	75.9
29 (유기화합물)	201	5.2	81.1
72 (철강)	178	4.6	85.7
총계	3,874	100.0	100.0

주: 1) 비농산물은 편의상 제3류(수산물)와 제25류 이상의 품목으로 가정.

2) 개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27 이외 나머지 국가임.

자료: UN Comtrade(2014), Statistics Databas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6. 17)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류(chapter)에 전체 수출의 54%가 집중되어 있어 설령 특정산업과 연관된 세번을 모두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ACC(Anti-Concentration Clause)가 있다고 해도 개도국 신축성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가급적 축소하고 대신 계수를 높이는 현행 선진국들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개도국 수출공산품을 실품목에 가까운 HS 6단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신축성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은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선진국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에도 유리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대개도국 융통성 제한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산물의 관세감축에서 개도국 신축성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들의 주장을 드러내 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표 5-10. 비농산물 유별 대개도국 수출액 및 비중(2011~13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6단위	수출액	비중	누적비중
1	271019 (기타 석유)	28,818	7.4	7.4
2	901380 (액정 디바이스)	23,052	6.0	13.4
3	854231 (프로세서/컨트롤러)	18,250	4.7	18.1
4	854232 (메모리)	17,507	4.5	22.6
5	870323 (중형차)	14,703	3.8	26.4
6	890190 (기타 화물선)	13,129	3.4	29.8
7	890120 (탱커)	9,700	2.5	32.3
8	870899 (자동차 부품, 기타)	9,314	2.4	34.7
9	890590 (기타 특수선박)	8,800	2.3	37.0
10	851770 (전화기 부분품)	7,691	2.0	39.0
11	852990 (기타 부분품)	5,868	1.5	40.5
12	271011 (석유류)	5,603	1.5	41.9
13	853190 (신호용기기 부분품)	4,134	1.1	43.0
14	853400 (인쇄회로)	3,876	1.0	44.0
15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3,681	1.0	45.0
16	290243 (파라-크실렌)	3,486	0.9	45.9
17	870322 (소형차)	3,055	0.8	46.6
18	842952 (360도 회전기계)	2,898	0.8	47.4
19	854239 (기타 집적회로)	2,858	0.7	48.1
20	854370 (기타 전기기기)	2,740	0.7	48.8
	소계	189,161	48.9	48.8
	총계	387,393	100.0	100.0

주: 1) 비농산물은 편의상 제3류(수산물)와 제25류 이상의 품목으로 가정.

2) 개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27 이외 나머지 국가임.

자료: UN Comtrade(2014), Statistics Databas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6. 17)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결국 선진국들이 기존 NAMA 스위스 공식 안에서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을 축소하는 제안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 관세감축에서 융통성을 활용하는 수산업 부문의 입장과는 상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 방향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선진국들의 개도국 우대 축소 논의는 현재의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서 대응하기보다 UR 관세감축방식을 역으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UR과 같은 평균 및 최저 감축은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위한 추가적인 융통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장과도 양립할 수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특정 몇 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많은 국가로 분배되어 나간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의 개도국 우대 축소 주장에는 역으로 우리가 단순 평균 감축 방식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협상대안이 될 수 있다.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관세감축공식을 일거에 대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이유로 협상을 촉진하는 데도 유용하다. 특히 이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도 나름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제4장의 동등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인 관세감축 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균형되게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관세감축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적절히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잡아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페이지로 제출하는 것도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 우대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은 개도국 우대의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개도국 우대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주장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축소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평균감축률에 앞서 최소감축률을 정하는 방안이다. 과거 UR에서는 최소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15%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도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융통성 확보가 중요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최소감축률을 낮추는 방법에 추가하여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수도 상당히 제한하는 조건(예를 들어 전체 품목 수 가운데 1~2% 정도)으로 관세면제를 인정하는 예외를 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아주 예외적인 조건으로 관세감축의무 면제를 인정하는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 경우 결국 어렵게 만들어 낸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도 소득 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늦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1) (최빈)개도국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 무쿼터 실시

DDA 협상이 부진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불신하며 주요 쟁점마다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DDA 협상을 타결하고, WTO 중심의 다자교역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DDA 협상 타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진국의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특히 DDA가 개발라운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진국은 개도국이 안고 있는 개발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도국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이행된다면 선진국과 많은 관련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그 혜택이 상당 부분 개도국에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난 1995년 WTO가 발족한 이후 UR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었지만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대부분 선진국이 가져갔다고 믿는 것이 현재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해 시장은 열렸으나 열린 시장으로 상품을 파는 것은 정작 선진국들이었다는 것이 개도국의 주장이다. 즉 개도국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선진국 소비자의 기호와 수준에 맞는 상품의 질과 가공, 마케팅 등이 필요한데 개도국이 처한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 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결국 시장개방의 과실은 선진국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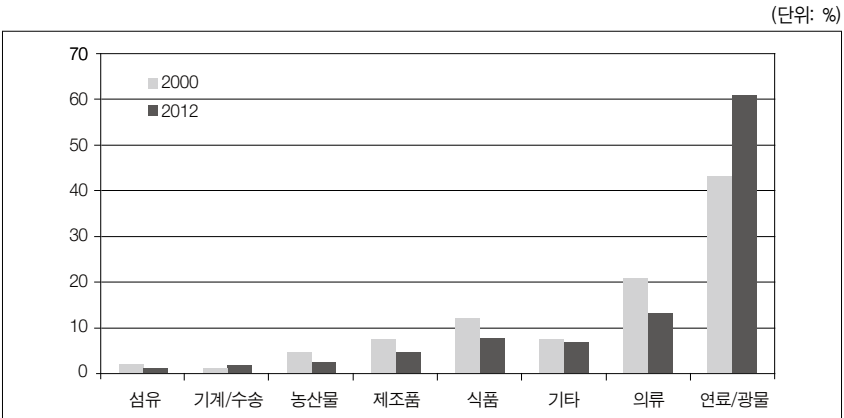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제무역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해서도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는 개도국,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단순 생산에 머물고 있는 (최빈)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원료 상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생산 이후 저장이나 2·3차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료상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최종상품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가치사슬은 (최빈)개도국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결국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가공 산업도 발달되어, 이를 운영하는 기술과 인적자본이 갖추어져

있기 전에는 일반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들이 무역자유화 혜택을 논의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따라서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과 농수산업 등 1차 산업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즉,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주력 수출품이 농수산물과 식품, 섬유, 연료와 광물 자원 등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도국 관심 상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 개방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들의 주력 수출상품(연료와 광물 등 1차 상품과 의류, 섬유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선진국 시장을 확보하여 DDA 타결에 따른 가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면 (최

그림 5-15.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상품 구성비 변화(2000년, 2012년)



자료: WTO(2013k),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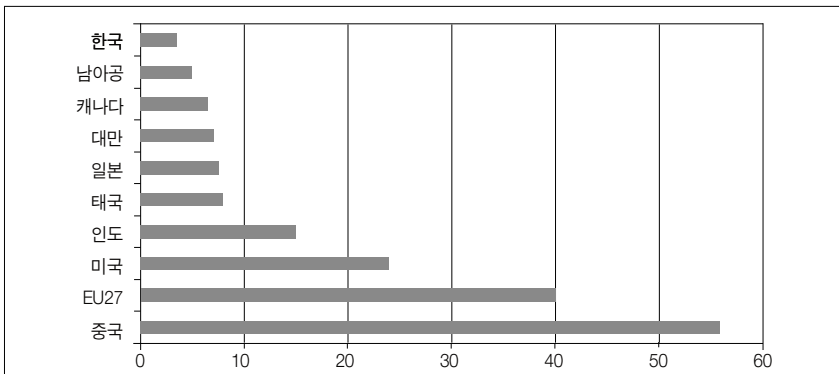
빈)개도국들도 DDA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타협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차적으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종(수출)상품에 대해서 선진국이나 또는 이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들이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이자 대표적인 시장임에도 무관세-무쿼터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신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지급에 대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보조 자체가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도 융통성을 보일 여유가 거의 없다. 더욱이 중국 및 인도 역시 최근 들어 농업보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보조 감축은 일부 개도국도 민감한 내부분제가 될 것이다.

그림 5-16.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2012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TO(2013k), p. 17.

표 5-11. GSP 또는 최빈국 특혜제도에 따른 주요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 현황

국가	무관세 범위	예외품목 수	주요 제외 품목
호주	100.0%	-	-
캐나다	98.6%	105	낙농, 계란, 돼지고기
EU	99.0%	91	무기 및 탄약류
아이슬란드	91.8%	707	고기 및 낙농제품, 계란, 채소 및 식품, 곡물 등
일본	97.9%	197	쌀, 설탕, 수산물, 가죽제품
뉴질랜드	100.0%	-	-
노르웨이	100.0%	-	-
스위스	100.0%	-	-
러시아	38.1%	6,885	석유제품, 구리, 철, 가죽 제품, 의류 등
미국	82.6%	1,864	낙농제품, 설탕, 코코아, 가죽제품, 면화, 섬유, 의류제품, 신발, 시계 등
칠레	99.5%	41	밀, 밀가루, 설탕
중국(2013)	61.5%	3,170	화학제품, 시계, 종이 및 목재제품, 면화, 섬유, 철강제품 등
인도	94.1%	674	고기 및 낙농제품, 채소, 커피, 담배, 철강제품, 구리제품 등
한국	90.4%	1,180	고기, 생선, 채소, 식품 등
대만	30.1%	6,159	플라스틱제품 일부,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일부, 귀금속 등
터키(2011)	79.7%	2,384	고기, 생선, 식품, 철강제품 등

주: 1) 예외품목 수는 각 국가의 HS 코드 최하부 단위(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를 기준으로 함.

2) 미국의 경우 AGOA하에서 최빈국에 대해 97.5%의 무관세 혜택을 제공.

3) 중국의 경우 2013년에 최빈국에 대해 전체 세전의 95%까지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보고함.

자료: WTO(2014), pp. 2-3.

2)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DDA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주요 수입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관세-무쿼터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일 첫 단계를 확보한 수준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 그리고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2단계로 무역원활화를 통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종합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을 통한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및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증가한 소득 때문에 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도국과의 관계개선 및 우호증진뿐만 아니라 DDA 타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미수. 2012. 「인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 시급」, *China Journal January 2012*, Vol. 65. 포스코경영연구소. 재인용: 김민성. 2014. 「발리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4.
- 김민성. 2014. 「발리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4.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보고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450000-000010.
- 서진교 · 최낙균 · 박지현 · 이창수 · 박순찬. 2009.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0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2013a. 『DDA 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대응』. 연구보고서 1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 서정민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2013b.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백훈 · 양주영. 2008. 『DDA/NAMA협상 Sliding Scale 채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외교통상부 용역 보고서.

[영문자료]

- ADB · UN ESCAP. 2009. *Designing and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Bellmann, Christophe. 2014. *The Bali Agreemen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the WTO*.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 Cairns Group. 2014. "Unofficial room documents." (March 12)
- Decreux Yvan and Lionel Fontagné. 2011. "Economic Impact of Potential Outcome of DDA II." CEPII-CIREM.
- FAO. 2014. "Bali Package - Implications for Trade and Food Security." FAO Trade Policy Briefs, No. 16.
- Haberli, Cristian. 2014. "After Bali: WTO Rules Applying to Public Food Reserves." Prepared for the Expert meeting on Reserves/Stocks and Specifically Their Potential Role in Market/Price Stabilization. (FAO, Rome, 30-31 January 2014).
- Hoekman, Bernard. 2013.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post-Bali: Three Suggestions." Building on Bali: A Work Programmes for the WTO, eds S. Evenett and A. Jara, VoxEU/CEPR e-book. (December 2013)
- Hufbauer, Gary and Jeffrey Schott. 2013. *Payoff fro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2014. "Post-Bali Business Priorities." World Trade Agenda.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9. *2009 Global Hunger Index the Challenge of Hunger: Focus on Financial Crisis and Gender Inequality*.
- Jatkar, Archana and Chenai Mukumba. 2014. "Unpacking the Bali Package A Snapshot of the Bali Ministerial Decisions of the WTO Members." Discussion Paper. CUTS International.
- Jean, Sébastien, David Laborde and Will Martin. 2008. "Choos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n Trade Negoti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788.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Moïsé, Evdokia, Thomas Orliac and Peter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118. OECD.

- Moïsé,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s Trade." Trade Policy Paper, No.144. OECD.
- Moïsé, Evdokia. 2013. "The Cos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Measur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57.
- OECD. 2003.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3)31/Final). 재인용: ADB · UN ESCAP. 2009. *Designing and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02. *Trade Facilitation: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Concepts and Benefits*.
- WCO. 2011. "Trade Facilitation: Instruments, Approaches, Trends, Initiatives and More." WCO News N^o65 June 2011.
- Worldpress. 2013. "The National Food Security Bill 2013. Will It Really Assure the Poor Freedom from Hunger?"
- WTO. 2008a.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 Special Session(TN/AG/W/4/Rev.4).
- _____. 2008b.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TN/MA/W/103/Rev.3).
- _____. 2008c. NAMA Simulation CD.
- _____. 2013a.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DEC).
- _____. 2013b. "General Services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37- WT/L/912).
- _____. 2013c.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38-WT/L/913).

- _____. 2013d.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39-WT/L/914).
- _____. 2013e. “Export Competition - Ministerial Declarat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40- WT/L/915).
- _____. 2013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42-WT/L/917).
- _____. 2013g. “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 (WT/MIN(13)/43-WT/L/918).
- _____. 2013h. “Duty-Free and Quota-Free(DFQF)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ing Countries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44-WT/L/ 919).
- _____. 2013i. “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Developing Countries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45-WT/L/920).
- _____. 2013j. “Cotton - Ministerial Decision.” Ministerial Conference - Nine Session(WT/MIN(13)/41-WT/L/916).
- _____. 2013k. “Market Access for Products and Services of Export Interest to Least-Developed Countries. Sub-Committe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WT/COMTD/ LDC/W/58)
- _____. 2014a.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L/931).
- _____. 2014b.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Korea).”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KOR/1).

_____. 2014c.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Hong Kong, China).”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HKG/1).

_____. 2014d.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Singapore).”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SGP/1).

_____. 2014e.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Israel).”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ISR/1).

_____. 2014f.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Mexico).”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MEX/1).

_____. 2014g.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WT/PCTF/ N/TPRM/1).

_____. 2014h.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China).”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CHN/1).

_____. 2014i. “Notification of Category A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Communication from Brazil).” Preparatory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WT/PCTF/N/BRA/1).

_____. 2014j. “G-33 Proposed Permanent Solution on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Committee on Agriculture - Special Session (JOB/AG/27).

_____. 2014k.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General Council(WT/GC/W/688).

_____. 2014l. “Duty-Free and Quota-Free(DFQF)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WT/COMTD/W/206).

WTO, ITC, UNCTAD. 2014. *World Tariff Profiles 2014*.

[신문기사]

“Discord on TF/Food Security.” 2014. *Washington Trade Daily*. (November 1)

“India Seeks Cooperation from African Countries at the WTO: Rajeev kher.” 2014.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Media Release. (August 21)

“Indian PM Seeks Food Security Support At Meeting with Head of UN Food Body.” 2014. BNA. (September 11)

[온라인자료]

Food Security Portal. 2014. “Will India’s National Food Security Bill Help or Hurt?” <http://www.foodsecurityportal.org/will-indias-national-food-security-bill-help-or-hurt>(검색일: 2014. 12. 5).

_____. 2014b. Notification of category.

World Bank.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4. 8. 1).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WITS). 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4. 11. 18).

WTO. 2014a. “Azevêdo launches new WTO Facility to deliver support to LDCs and developing countries.” http://www.wto.org/english/news_e/

news14_e/fac_22jul14_e.htm(검색일: 2014. 7. 30). 재인용: 김민성. 2014. 「발리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8, No. 44.

_____. 2014b. “Azevêdo urges members to continue talking about ways to move forward beyond Bali impasse.” WTO 2014 NEWS ITEMS.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4_e/tnc_infstat_31oct14_e.htm (검색일: 2014. 11. 14).

_____. 2014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4.”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검색일: 2014. 10. 17).

UN Comtrade. 2014. Statistics Databas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6. 17).

부 록

1.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산업별
감축률 (농업)
2.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산업별
감축률: NAMA



부록 1.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산업별 감축률 (농업)

(단위: %)

구분	미국	EU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선진국	개도국	
실질 감축률 (BND)	쌀	50.00	0.00	0.00	0.00	0.00	0.44	2.99	8.73
	곡물	27.99	3.28	19.04	6.52	0.57	6.35	17.35	20.55
	채소/ 과일	45.17	29.77	20.86	58.82	0.80	10.68	38.38	6.18
	육류/ 낙농	34.43	44.14	17.99	28.88	4.72	20.59	42.42	13.45
	가공 식품	38.62	25.56	12.60	17.71	0.69	10.44	29.58	5.01
	기타 농업	29.27	8.06	11.06	26.23	0.00	0.59	11.76	7.06
	전체	38.37	25.72	15.22	20.96	0.96	10.37	31.40	9.37
명목 감축률 (MFN)	쌀	50.00	30.47	0.00	0.00	19.00	0.44	42.03	14.24
	곡물	28.09	55.39	26.58	3.40	21.52	43.40	51.57	32.58
	채소/ 과일	43.17	51.01	25.10	32.68	36.20	41.43	40.31	27.09
	육류/ 낙농	36.33	57.36	14.61	16.92	21.10	39.41	45.58	26.76
	가공 식품	28.00	51.16	29.17	10.24	28.77	16.89	33.20	27.14
	기타 농업	29.27	51.64	30.91	22.28	36.28	42.57	16.95	33.36
	전체	32.06	51.97	26.13	12.27	25.93	25.05	37.29	27.68

자료: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검색일: 2014. 11. 18)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2. 4차 의장수정안에 따른 국별·산업별 감축률: NAMA

(단위: %)

구분	브라질	중국	EU28	인도	한국	미국	선진국	개도국	
실질 감축률 (MFN 기준)	채취업	0.63	15.40	6.80	15.48	8.53	2.86	5.63	0.93
	섬유/ 직물	23.55	48.22	32.29	29.93	21.08	36.06	23.91	13.09
	화학/ 고무/ 플라스틱	11.04	55.98	22.35	49.75	49.44	32.12	15.69	10.05
	철강/ 금속	16.39	45.70	23.88	52.00	47.90	44.72	20.85	9.46
	수송기기	5.30	34.62	44.12	41.82	25.11	17.20	16.14	11.87
	전기전자	12.86	82.66	36.26	69.63	16.33	16.48	2.02	12.01
	기계	7.05	69.26	27.86	60.82	30.54	10.42	3.21	6.72
	기타 제조업	11.80	56.53	30.88	32.07	31.83	21.06	13.99	9.73
	전체	8.76	58.41	27.39	34.33	23.85	18.71	9.83	9.11
	명목 감축률 (BND 기준)	채취업	58.42	8.80	62.88	64.10	60.07	45.75	41.65
섬유/ 직물		57.16	24.55	56.57	62.18	37.90	33.31	30.42	47.48
화학/ 고무/ 플라스틱		49.66	23.32	63.09	63.40	40.25	19.20	24.09	56.50
철강/ 금속		54.68	17.39	66.23	68.34	27.94	14.56	21.50	55.28
수송기기		34.27	15.74	67.30	47.11	45.50	17.18	31.10	49.72
전기전자		57.41	7.73	42.12	25.29	20.13	9.60	10.15	37.02
기계		57.19	15.07	50.59	41.57	34.81	6.18	12.08	46.47
기타 제조업		53.98	17.82	65.28	40.33	41.97	11.71	20.99	51.93
전체		53.53	15.00	58.44	52.89	40.03	18.72	23.13	47.77

자료: World International Trade Solution(2014), Tariff and Trade Analysis, [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TariffAndTradeAnalysis/AdvancedQueryDefinition.aspx?Page=TariffandTradeAnalysis)
 alysis(검색일: 2014. 11. 18)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ecutive Summary

Post Bali Doha Round: Korea's Perspectives

Jin Kyo Suh, Min-Sung Kim, Backhoon Song, and Chang Soo Lee

In early 2014, building on the Bali success, WTO Members began revisiting the rest of the DDA under its three main pillars of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and servic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ali package itself, however, turned out to be more difficult than expected. In July, India signaled that it was unwilling to join the consensus on a proposed protocol of amendment integrating the new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nto the WTO rule book, unless it saw evidence of progress on the concerns it had raised in Bali, starting with a permanent solution on public stockholding. This new impasse, only six months after Bali, not only affected mutual trust among countries but also significantly delayed discussions on the post-Bali work programme mandated by Ministers. Fortunately, after several months of deadlock, an agreement reached in mid-November betwee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allowed Members to overcome the impasse, paving the wa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li deal on trade facilitation, as well as progress on the broader negotiating agenda.

Members will now need to turn their attention to the arduous task of defining the contours and content of a possible post-Bali work programme.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will consist of undertaking a reality check of the 2008 modalities. While the existing draft texts cannot be dismissed, Members also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2008 draft modalities was not accepted as a

basis of future negotiations by developed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Furthermore, during the process of negotiations on DDA work programmes, it is most likely that the draft texts will be significantly changed to reflect arguments of developed countries - the reduction of gap in the applied and bound tariffs, the reduction of farm subsidies of China and India, and the reduction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for developing countries.

Given such circumstances, Korea, a member of the G-33, should establish feasible and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on the following key issues in which Korea has deep interest. First, Korea needs to support the positions of developed countries on reducing the difference in MFN applied tariffs and bound tariffs. The ratio of applied tariffs to bound tariffs in Korea is just 0.8, which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average values for both developed countries (0.6) and developing countries (0.4).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ropose a new tariff reduction method which relates to water. For example, a larger cut is applied to products which have more water.

Second, in absolute terms, farm support in China is now nearing the level of EU farm subsidies although China's farm support is heavily focused on payment for general services such as infrastructure. India's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has also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input and investment subsidies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Korea's farm support is still very timid, there will be almost no substantial impact on the operations of Korea's agricultural policy.

Third, the reduction of S&D for developing countries could negatively affect Korea's trade policies because it can produce results that Korea could not obtain: special products with no tariff cut. Hence, Korea needs to build its alliance with the G-33 firmly, which strongly support special products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f the reduction of S&D for special products is unavoidable, Korea needs to put its emphasis on treatments rather numbers of special

products because its agricultural production is centered on several products such as rice.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tical costs of an agreement to increase market access could be reduced substantially by using a proportional-cut approach (for example, overall X percent reduction with a minimum cut of Y percent on each tariff line, following the Uruguay Round model) rather than progressive tariff-cutting formulas which has been discussed till now.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자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울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연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나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용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대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근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근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근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희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대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광성일 · 박재은 ·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규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규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용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중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울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교회재·이준규·오민아·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오승환·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오승환·정용승·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장은정·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인·안지연·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이준원·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김영귀·박지현·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박혜리·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서정민·김민성·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김정곤·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서진교(徐溱敎)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농업 및 자원경제학 석·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現, E-mail: jksuh@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공저, 2012)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공저, 2013) 외

김민성(金民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skim411@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반응』(공저, 2012)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공저, 2013) 외

송백훈(宋栢勳)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역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 E-mail: bsong@sungshin.ac.kr)

저서 및 논문

「한국과 ASEAN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국제통상연구』, 2012)
「한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무역학회지』, 2012) 외

이창수(李彰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호주국립대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경희대 국제학과-국제대학원 교수
(現, E-mail: chslee@khu.ac.kr)

저서 및 논문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3)
“Impacts of Sequential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A CGE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Global Economic Review*, 39(4), 365-381.

연구보고서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일 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42 FAX: 044-414-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09-9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1072-8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st Bali Doha Round: Korea's Perspectives

Jin Kyo Suh, Min-Sung Kim, Backhoon Song, and Chang Soo Lee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합의로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쟁점별 협상대책을 수립·제시하였다.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를 축소하려는 선진국들의 요구는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보조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자료갱신 요구도 우리나라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우대 축소 움직임은 농업부문의 특별품목 및 관세상한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좋은 대우의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방식의 관세 감축이 기존 방식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